

I

# 최근 3년간 언론 관련 판결 분석

---



# 제1부

# 언론 관련 판결의 통계적 분석

---

제1장 분석 범위 및 내용

제2장 일반사항

제3장 소송 결과

제4장 손해배상청구 사건

제5장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기사삭제 사건



# 제1장

## 분석 범위 및 내용

---

### 1. 분석 대상

#### (1) 분석 대상 명예훼손 언론소송의 확정판결은 288건

이 보고서에서는 명예훼손 언론소송 판결의 분석을 위해,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급 법원에서 선고된 판결 중에서 총 502건의 판결문을 1차적으로 수집하였다. 이 중 최종 분석대상은,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같은 기간(2022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내에 확정된 판결 가운데, 언론사 또는 언론인을 상대로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침해를 이유로 제기된 민사소송 확정판결에 한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분석대상은 사건 기준 확정판결 288건이다.

분석대상 선정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였다.

첫째, 법원의 판결이 조정성립으로 마무리된 사건과 소송이 아직 계류 중인 사건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언론사와 함께 기고자 또는 제보자가 공동 피고로 포함된 사건의 경우, 언론사 관련 내용만을 추려 분석하였고, 기타 공동 피고(기고자·제보자)에 대한 평가는 제외하였다. 셋째, 심급별로 사건이 취하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원심 판결 결과를 분석에 반영하였다. 이를 통해 보고서는 심급별·기간별로 확정된 언론보도 명예훼손 민사판결만을 선정함으로써 해당 시기 언론 관련 법원의 판단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 매체별 분석 대상 총 건수는 419건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매체가 공동 피고로 포함된 경우 각 매체별 보도 내용이나 형식이 상이하며, 이에 따라 법원의 인용 여부, 인용 범위, 손해배상청구 및 인용 금액도 매체별로 다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단일 사건 내 다수의 피고 매체가 포함된 경우, 각 매체별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통계분석 목적에 따라 소송 사건을 피고 매체 수에 따라 분할하여 집계한 결과, 확정판결 기준으로 매체별 분석 대상 건수는 총 419건이다.

## 2. 자료수집 방법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작성에 앞서, 판결문 수집과 확정여부 확인을 위해 일산 법원도서관 특별창구, 법원 대국민서비스 인터넷 시스템, 케이스노트 프로 등 여러 경로를 적극 활용하였으며, 뉴스 기사와 ‘나의 사건 검색’시스템을 통한 이중 확인을 거쳐 데이터의 완결성을 확보하였다. 자료수집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 판결문의 수집, 확정여부 확인, 데이터 검토 절차이다.

### (1) 판결문 수집

먼저, 일산 법원도서관에 설치된 ‘판결문 검색·열람 특별창구’를 활용하여 수집을 시작하였다. 이 특별창구는 법원에서 선고된 각종 판결문을 체계적으로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해당 창구를 통해 분석 대상으로 삼을 판결문의 법원명과 사건번호 등 핵심 정보를 파악하였다. 현장에서 다양한 사건의 정보와 목록을 직접 확인하면서, 필요한 판결문을 정확히 특정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를 마련하였다.

그 다음에는 법원에서 국민에게 제공하는 판결문 인터넷 열람 시스템과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에서는 사전 확인한 사건번호와 법원명 등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사건의 판결서를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판결서 사본을 유료로 구매하여 확보할 수 있다.

아울러, 국내 최대 규모의 법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 중인 케이스노트 프로(CaseNote Pro) 서비스도 적극 활용하였다. 해당 플랫폼은 법원에서 공개한 판결문뿐 아니라, 다양한 기초자료 및 관련 논평 등도 함께 제공하므로, 누락된 판결문이나 추가적인 사건정보를 보완적으로 수집하는 데 매우 유용했다.

참고로, 다양한 경로들을 통해 분석 대상 기간 중 판결문을 최대한 수집하려 노력하였으나, 동 기간 법원에 의해 생산된 판결문 전수를 대상으로 분석한 것은 아니다.

### (2) 판결 확정 여부 확인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집된 판결문이 ‘확정판결’인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각 판결문이나 사건에 관련된 뉴스를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그 기사 내용에서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 및 피고, 사건의 진행경과, 판결 확정 여부 등이 언급된 점을 확인하였다. 뉴스기사는 사건의 사회적 파장과 판결 이후의 진행상황을 비교적 신속하고 상세하게 보도하므로, 판결 확정여부를 파악하는 1차 자료로 활용된다.

이후 해당 뉴스 기사에서 언급된 사건번호, 원고·피고, 사건명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법원에서 운영하는 '나의 사건 검색' 시스템을 직접 이용하였다. 이 시스템에서는 원고 또는 피고,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사건의 진행 현황과 판결의 확정 여부(예: 항소, 상고 여부 등)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모든 판결문에 대한 확정여부를 최종적으로 검증하였다.

### (3) 데이터 검토 절차

위의 절차로 수집 및 확정여부가 확인된 판결문은 사건번호, 당사자, 판결 선고일자, 판결 요지 등 주요 정보를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분석 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데이터는 중복 여부, 정보 누락, 오류 등을 추가적으로 점검하여, 최종적으로 분석에 적합한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 3. 분석 내용

본 보고서의 제1부에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명예훼손 언론소송(확정판결 기준)의 통계적 분석(일반사항, 소송 결과) 내용을 담고 있다. 다양한 항목별로 세분화된 분석을 통해, 명예훼손 언론소송의 현황과 쟁점 및 손해배상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명예훼손 언론소송에 대한 통계적 분석의 항목별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일반사항

- 심급별 확정판결 건수, 청구유형별 확정판결 건수, 원고 유형별(대표 원고, 공적 인물 등) 확정판결 건수, 매체별 분류, 매체별 피고구성, 보도유형별 현황

### (2) 소송 결과

- 최종 소송 결과, 원고의 원심판결 유지 여부, 청구유형별 소송 결과, 원고 유형별 소송 결과, 매체유형별 소송 결과

### (3) 손해배상청구 사건

-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결과, 손해배상 청구액 및 인용액, 인용액의 분포, 원고유형별 승소율과 인용액, 매체유형별 원고 승소율 및 인용액, 언론인 승소 여부, 손해배상청구 인용 및 기각 사유

(4)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 기사삭제청구 사건

- 각 청구유형별(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기사삭제) 소송 결과, 정정보도청구 및 반론보도청구 기각 사유

## 4. 통계분석을 위한 코딩 항목 및 코딩 방법

### (1) 코딩 항목

〈표 1〉 코딩 항목

구분	코딩 항목	
일반사항	01. 판결번호	02. 선고일자
	03. 법원명	04. 심급
	05. 청구의 종류	06. 청구원인 침해유형
원고	07. 대표 원고 분류	08. 공적인물 분류
피고	09. 사건 피고 구성	10. 매체별 피고 구성
	11. 피고 언론인 개인 승소 여부	
매체분류	12. 매체별 분류	
보도내용분류	13. 방송 외 기사 유형	14. 방송프로그램 유형
청구별 처리결과	15. 청구별 처리결과	
	15-1. 정정보도	15-2. 반론보도
	15-3. 추후보도	15-4. 기사삭제
	15-5. 손해배상	
판결결과	16. 최종결과	17. 확정여부
	18. 심급별(1심, 2심, 3심) 결과	19. 원고 기준 원심유지 여부
손해배상	20. 사건 청구액	21. 사건 인용액
	22. 매체별 청구액	23. 매체별 인용액
	24. 손해배상 인용사유	25. 손해배상 기각사유
정정보도	26. 정정 기각사유	27. 정정 각하사유
반론보도	28. 반론 기각사유	29. 반론 각하사유

## (2) 코딩 방법

수집된 판결을 코딩하는 과정에서 개념이 모호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기존 판결분석보고서의 분석 방법을 기본 원칙으로 삼되, 보다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분류 기준을 추가로 마련하여 적용하였다.

### 1) 대표 원고 분류 기준

- ① 다수의 원고가 함께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개인과 단체가 모두 청구인으로 포함된 경우에는 대표 원고를 '단체'로 분류하였다.
- ② 판결에서 공적 인물이라고 직접 언급하거나 암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판례나 학설에서 꾸준히 공인으로 분류한 인물은 공적 인물 범주에 포함시켰다.
- ③ '공적 인물'의 범위에는 정치인, 고위 공직자, 전문가, 유명 언론인, 유명 기업인, 유명 연예인 등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거나 단체의 대표자로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때 고위 공직자는 판결문에 명확히 기재된 경우와 「공직자윤리법」 제3조<sup>1)</sup>에서 정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국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고위 공직자'가 아닌 '정치인'으로 구분하였다.
- ④ 공적 인물 여부는 원고가 소송 당시 현직이 아닌 전직이더라도, 그 재직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한 보도가 쟁점인 경우 포함하였다. 즉, 임기만료, 사직, 해임 등으로 이미 직위를 상실한 경우라도 해당 사건 당시의 지위를 반영하였다.
- ⑤ 일반인과 공적 인물이 공동으로 원고에 있는 경우에는 대표 원고를 '공적 인물'로 분류하였다.

### 2) 매체명 분류 기준

- ① 오프라인 매체(예: 신문, 잡지 등)와 별도로, 동일 언론사의 온라인 매체(언론사닷컴)을 대상으로 청구가 제기된 경우나 오프라인과 온라인 기사 모두에 의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오프라인 매체와 온라인 매체(닷컴)를 각각 독립된 매체로 구분하여 코딩하였다.  
예) 사건의 피고가 (주)A신문사 한 곳이지만, 청구취지에서 'A신문'과 'A신문 홈페이지' 각각에 대해 정정보도 등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를 두 개의 개별 매체로 나누어 코딩·분석함
- ② 피고가 언론인 개인일 경우에는 해당 언론인이 소속된 언론사(매체)를 기준으로 코딩하였다. 즉, 개인 언론인이 피고인 사건도 최종적으로는 해당 언론사의 매체명으로 분류하여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1) 공직자윤리법 제3조는 공직자를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등 주요 정무직공무원,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별정직·외무·정보·경호공무원, 법관·검사, 군·경·소방 고위직, 대학 등 각종 학교의 주요 간부, 일정 규모 이상의 임기제공무원, 공기업·금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임원 등 사회 각 분야의 고위공직자로 규정한다.

### 3) 매체별 피고 분류 기준

- ① 소송에 포함된 언론인 피고를 직위별로 '대표', '국장', '부장', '담당' 등으로 세분화하여 파악하였다.
- ② 피고가 대표이사, 편집국장, 보도본부장 등 고위직이라 하더라도 해당 언론인이 보도 기사를 직접 작성한 경우, '담당'으로 분류하였다.

### 4) 언론인 개인에 대한 판결 결과 처리 기준

언론인에는 언론사 대표, 기자, 프로듀서 등 언론사에 소속된 인물만을 포함하였으며, 외주 제작사 직원 등 언론사 소속이 아니거나 보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인물은 제외하였다. 언론인 개인은 정정보도 등 보도 게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권한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항목은 언론인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경우에 한해 별도로 코딩·분석하였다.

### 5) 청구별 소송 결과 처리 원칙

- ① '원고 승소' 및 '원고 승소율'에는 원고 일부승소 사건(예: 손해배상액·정정보도문 등이 청구보다 감액·감축된 경우, 정정보도는 인용되고 손해배상은 기각된 경우 등)을 모두 포함하였다.
- ②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거나 원심판결이 일부 변경 또는 취소되는 때, 그리고 3심에서 상고기각·원심파기 등이 있는 경우에도, 판결의 실질적 취지가 원고의 청구를 일부라도 인정한 경우 '원고 승소'로, 전부 기각된 경우 '원고 패소'로 분류하였다.

### 6) 원고 원심판결 유지 여부

2심 판결 시의 '원심'은 1심 판결을, 3심(상고심) 판결 시의 '원심'은 2심 판결을 말한다. 상급심이 하급심과 동일하게 원고 청구를 인용한 경우는 '원심유지(승유지)'로, 하급심과 달리 원고 청구를 기각한 경우는 '원심변복(승변복)' 등으로 구분하여 코딩하였다.

### 7) 매체별 청구액 및 인용액 산정 방법

- ① 피고가 복수일 경우, 청구취지액 및 인용액은 매체별로 구분하여 기록하였다.
- ② 복수의 매체가 연대하여 배상을 청구 또는 인용받은 경우, 동일한 금액을 각 매체별로 각각 집계하였다.  
예) 'A신문사와 B신문사가 연대하여 1억 원을 배상'이라면, A신문사·B신문사 각각의 청구액에 1억 원을 기재
- ③ 지면 신문과 인터넷(언론사닷컴) 등 한 언론사의 두 매체에 동시 청구·인용된 경우, 해당 청구액 및 인용액을 각 매체별로 균등하게 분할해(예: 절반씩) 집계하였다.  
예) 한 언론사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각 지면 및 홈페이지에 모두 요구한 경우, 각 매체에 손해배상금액의 1/2씩 기재

- ④ 언론인 개인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이 청구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언론사 소속 매체에 대한 청구액 및 인용액에 합산하여 기록하였다. 단, 언론사와 언론인에게 연대 배상 청구가 있으면 언론사에 대한 청구액 및 인용액만 기재하였다.

예) 'A신문사와 담당기자가 연대해 1억 원을 배상'이라면, 1억 원을 기재

- ⑤ 상소심 판결문에 청구취지액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심의 청구취지액을 기재하되, 상소과정에서 청구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금액을 반영하였다.

## 제2장 일반사항

---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확정된 명예훼손 언론소송 288건(사건 단위)을 선정하였으며, 이들 사건의 심급별 판결문을 모두 집계한 결과 총 502건의 판결문이 확인되었다. 또한, 확정된 판결의 각 심급에서 피고가 된 언론매체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전체 매체별 집계는 722건에 달하며, 이 중 실제 확정판결 기준에 따라 매체별로 분리·선정된 419건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단일 사건 또는 판결에서 복수의 매체가 피고로 지정되는 경우, 각 매체를 개별적 분석단위로 분리하여 통계적 분석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데이터셋(사건 단위 288건, 판결문 단위 502건, 매체 단위 419건)을 토대로 심급별 확정판결 건수, 청구유형별 현황, 원고유형별 분포, 매체유형별 통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동일 사건이라도 심급과 매체에 따라 달라지는 판결 결과와 쟁점을 반영함으로써, 명예훼손 언론소송 판결의 경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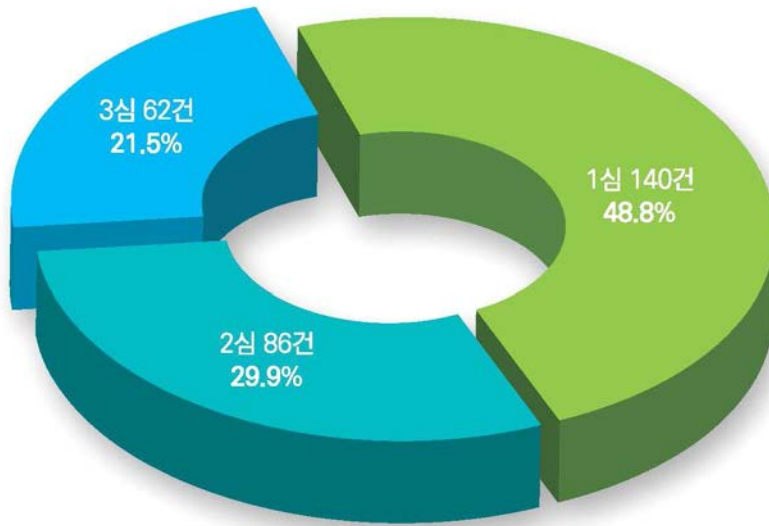
## 1. 심급별 확정판결 건수

1심 48.6%, 2심 29.9%, 3심 21.5%

심급별 확정판결 건수는 '최종 확정심급' 기준으로 집계하였다. 즉, 한 사건이 1심에서 확정되면 1심에, 2심까지 진행된 후 확정되면 2심에, 3심(상고심)까지 올라가 확정되면 3심에 각각 1건씩만 반영하였다.

총 288건의 확정판결 중 140건(48.6%)이 1심에서 확정되었고, 86건(29.9%)(환송후심 1건 포함)은 2심에서, 62건(21.5%)은 3심에서 확정되었다. 전체 사건의 약 51.4%(148/288건)는 1심에서 종결되지 않고 2심 또는 3심까지 진행되었으며, 이는 명예훼손 언론소송의 절반 이상이 상급심까지 이어져 불복률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1심 확정 사건은 주로 사실관계가 명확하거나 쟁점이 단순한 경우에 해당하며, 2·3심 확정 사건은 사회적 이슈나 법리 해석이 쟁점이 되어 항소·상고 등 심급이 상승한 경우가 많았다.

〈표 2-1〉 심급별 건수



## 2. 청구유형별 확정판결 건수

원고가 선호하는 피해구제 방법은 손해배상 > 정정보도/손해배상 순

288건의 확정된 명예훼손 언론소송을 청구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표 2-2>와 같이 원고는 주로 손해배상, 정정보도, 반론보도, 기사삭제 등 다양한 피해구제 방법을 청구하였으며, 손해배상청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1) 손해배상 단독 청구가 가장 많음

전체 288건 중 손해배상만을 단독으로 청구한 사례가 112건(38.9%)에 달해, 피해구제 수단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장 많이 선택되었다. 이는 명예훼손 언론소송에서 금전적 배상이 가장 선호되는 피해구제 방법임을 보여준다.

### (2)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동시 청구가 두 번째로 높음

정정보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청구한 사례는 73건(25.3%)으로, 전체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원고는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침해에 대한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정정보도청구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같이 청구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손해배상·정정보도 외 복합 청구 다수

‘손해배상/기사삭제’ 22건(7.6%), ‘정정보도/반론보도/손해배상’ 20건(6.9%), ‘정정보도/반론보도’ 13건(4.5%), ‘정정보도/손해배상/기사삭제’ 12건(4.2%) 등 복합청구가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이처럼 여러 유형을 병합하여 청구하는 복합청구의 비율이 전체의 약 40%를 상회한다.

반면 반론보도, 기사삭제, 추후보도 등만을 단독 또는 추가로 청구한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결론적으로, 명예훼손 언론소송에서 원고는 주로 손해배상청구(단독 및 복합 포함)에 집중하며, 상당수는 정정보도 등 복수의 구제수단을 함께 청구함으로써, 금전적 배상과 실질적 명예회복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2〉 청구유형별 확정판결 건수

청구명	건수	비율(%)
손해배상	112	38.9
정정보도/손해배상	73	25.3
손해배상/기사삭제	22	7.6
정정보도/반론보도/손해배상	20	6.9
정정보도	15	5.2
정정보도/반론보도	13	4.5
반론보도	12	4.2
정정보도/손해배상/기사삭제	12	4.2
정정보도/반론보도/손해배상/기사삭제	3	1.0
추후보도/손해배상	2	0.7
기사삭제	1	0.3
반론보도/손해배상	1	0.3
손해배상/기사삭제/기타	1	0.3
손해배상/기타	1	0.3
합 계	288	100.0

〈표 2-3〉에서는 2022~2024년 명예훼손 언론소송 판결 288건을 대상으로, 피해구제 청구방식을 청구권별로 중복집계하여 분석하였다. 중복집계란, 한 사건에서 손해배상·정정보도·기사삭제 등 복수의 구제수단이 함께 청구된 경우, 이를 각각의 청구유형별로 분리하여 모두 합산 집계하는 방식<sup>2)</sup>을 말한다. 즉, 사건 건수와 무관하게 실제로 법원에 요청된 전체 청구권의 빈도와 비율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전체 청구권 473건 중 손해배상청구가 247건(52.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손해배상이 단독으로 청구되기도 하지만, 다른 청구(정정보도, 반론보도, 기사삭제 등)와 병합되어 함께 신청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로 원고들은 명예훼손 피해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정정보도청구는 136건(28.8%)으로 두 번째로 빈번했다. 다수 사건에서 손해배상과 병합하거나, 반론보도 등과 동시에 청구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는 원고가 단순한 금전적 배상 외에도 사실관계의 바로잡기와 명예회복을 적극적으로 원함을 의미한다. 더불어, 반론보도청구(49건, 10.4%)와 기사삭제

2) 한 사건에서 손해배상, 정정보도, 기사삭제 등을 동시에 청구했다면 사건 건수는 1건이지만, 청구권별로 따로 세면, 예를 들어 1건을 손해배상 1 + 정정보도 1 + 기사삭제 1 = 3건으로 집계한 것을 의미한다.

청구(39건, 8.2%)도 주요 피해구제 수단으로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추후보도청구(2건, 0.4%) 등 기타 구제 수단도 함께 집계되었다.

이러한 중복집계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소송의 실질적인 권리구제 요구 총량과 개별 청구유형의 실제 선호 현황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 단순 사건수 집계와 달리, 다수 사건에서 복수의 청구권 병합이 이루어지므로, 실제 현장에서 손해배상 등 핵심 구제수단의 선택 빈도가 더욱 높게 나타난다. 결국, 원고들은 단일 구제 수단이 아니라 금전적 배상(손해배상)과 명예회복(정정보도 등) 등 다양한 청구권을 병합하여 제소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는 우리 사회의 권리의식이 확대되고, 복합적인 피해구제 요구가 언론분쟁 실무에서 보편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2-3〉 청구유형별 중복집계 건수(각 청구권별 합산)

청구명	건수	비율(%)
손해배상	247	52.2
정정보도	136	28.8
반론보도	49	10.4
기사삭제	39	8.2
추후보도	2	0.4
합 계	473	100.0

### 3. 원고유형별 현황

언론소송을 가장 많이 제기한 원고유형은 일반인

2022~2024년 명예훼손 언론소송 확정판결 288건을 분석한 결과, 원고의 유형은 크게 ‘개인’과 ‘단체’로 구분된다. 전체 사건 중 개인이 제기한 소송은 170건(59.0%), 단체 소송은 118건(41.0%)이다. 이는 과거와 달리 언론 피해구제 소송이 일부 공적 인물이나 법인 등 단체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인 등 사회 각계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개인 원고 중에서는 ‘일반인’이 113건(개인의 66.5%, 전체 사건의 약 40%)으로 가장 많았고, ‘공적 인물’(57건, 개인의 33.5%)이 뒤를 이었다. 공적 인물 중에서는 정치인(25건, 공적인물의 43.9%), 고위공직자(18건, 공적인물의 31.6%), 기타 유명인·언론인 등이 포함되어 다양한 사회적 이슈가 소송 쟁점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체 원고를 세분화하면, 기업이 45건(단체의 38.1%, 전체의 15.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외에도 일반단체(20건), 종교단체(14건),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시민단체 등이 고르게 분포하였다.

〈표 2-4〉 원고유형별 확정판결 건수

원고유형		건수	비율(%)
개인	일반인	113	39.2
	공적인물	57	19.8
	소 계	170	59.0
단체	기업체	45	15.6
	기타 일반단체	20	6.9
	종교단체	14	4.9
	공공단체	9	3.1
	지방자치단체	9	3.1
	언론사	8	2.8
	국가기관	7	2.4
	교육기관	3	1.0
	시민단체	3	1.0
	소 계	118	41.0
합 계		288	100.0

〈표 2-5〉 공적인물 유형별 확정판결 건수

공적인물 유형	건수	비율(%)
정치인	25	43.9
고위공직자	18	31.6
기타 유명인	6	10.5
유명 언론인	4	7.0
유명 연예인	2	3.5
유명 기업인	1	1.8
유명 예술·체육인	1	1.8
합 계	57	100.0

#### 4. 매체유형별 현황

인터넷신문<sup>3)</sup>에 대한 소송이 전체 매체 중 가장 높은 비중 차지

〈표 2-6〉에 따르면, 명예훼손 언론소송 확정판결 288건을 매체별로 분류한 결과, 총 419건 중 인터넷신문이 240건(57.3%)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언론분쟁의 중심이 빠르게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문은 79건(18.9%), 방송은 76건(18.1%)으로 각각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 신문·방송 등 전통 미디어도 여전히 언론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잡지(6건, 1.4%)와 뉴스통신(4건, 1.0%)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언론 관련 소송이 다양한 매체유형에 걸쳐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타(14건, 3.3%)는 언론사명 또는 매체유형이 불분명한 사례를 포함한다.

〈표 2-6〉 매체유형별 현황

매체유형	건수	비율(%)
인터넷신문	240	57.3
신문	79	18.9
방송	76	18.1
잡지	6	1.4
뉴스통신	4	1.0
기타 <sup>4)</sup>	14	3.3
합 계	419	100.0

3) 언론보도를 직접 생산하거나 직접 생산한 보도를 자사 또는 계열사 홈페이지에 제공 또는 매개하는 '독립형 인터넷신문'과 '언론사닷컴'을 '인터넷신문'으로 분류하였다.

4) 기타는 기타와 불명을 모두 포함한다(기타 0건, 불명 14건).

## 5. 보도유형별 분류

매체유형별 확정판결을 보도유형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419건 중 ‘방송 외’ 매체가 337건(80.4%)을 차지했고, ‘방송’은 82건(19.6%)이었다.

‘방송 외’ 337건에서 스트레이트 기사가 325건(96.4%)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는 명예훼손 언론소송이 주로 사실 전달에 집중된 보도 기사에서 발생함을 의미한다. 반면, 해설이나 논평 사설, 칼럼 등은 6건(1.8%)에 그쳤고, 기타 유형도 6건(1.8%)으로 매우 드물게 나타났다. 즉, 논평이나 해설 기사보다는 단순 사실 전달 기사가 명예훼손 분쟁의 주요 원인임을 알 수 있다.

‘방송’ 82건 중에서는 뉴스 프로그램이 57건(69.5%)으로 가장 많았고, 탐사·시사고발 프로그램이 19건(23.2%)으로 뒤를 이었다. 교양 프로그램과 기타 유형은 각 4건(4.9%), 2건(2.4%)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이었다. 이는 방송 분야에서는 주로 메인 뉴스와 시사·고발 보도 프로그램에서 명예훼손 소송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결국, 명예훼손 언론소송은 신문·인터넷 등에서는 단순 사실 전달 기사(스트레이트)에, 방송에서는 뉴스와 탐사·고발 프로그램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이슈나 논란이 실시간 뉴스와 주요 보도를 통해 신속하게 확산될 때 명예훼손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보여준다.

〈표 2-7〉 보도유형별 소송빈도

보도유형		건수	비율(%)
방송외	스트레이트	325	96.4
	스트레이트/사설	3	0.9
	칼럼	3	0.9
	기타*	6	1.8
	소 계	337	100.0
방송	뉴스	57	69.5
	고발	19	23.2
	교양	4	4.9
	기타*	2	2.4
	소 계	82	100.0

\* 기타: 기타+불명

※ 방송 다시보기가 별도 가공 없이 그대로 인터넷을 통해 제공될 경우 방송 보도로 간주함

## 6. 피고 분류

피고, 언론사 단독이 절반 이상

조직 책임이 중심이지만 공동·개별·복합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

2022~2024년 명예훼손 언론소송(매체별 확정판결 기준)을 피고구성별로 분류한 결과, 피고는 크게 ‘언론사 단독’, ‘언론사/담당 공동’, ‘담당 단독’, ‘대표 또는 편집책임자’, 그리고 ‘복합구성(여러 직위 혼합)’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담당자는 기자, PD, 작가 등 2명 이상인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피고 구성별 분석 결과, 언론사 단독 피소가 전체의 50.4%로 가장 많았고, 언론사와 담당자(26.7%), 담당자 단독(6.0%) 등의 순이었다.

### (1) 언론사 단독 피고(조직 책임 중심)

전체 419건 중 언론사 단독이 211건(50.4%)으로 명예훼손 언론소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소송에서 원고가 언론사라는 조직에 책임을 묻는 경향이 가장 강하며, 조직적·법인책임이 소송의 주요 쟁점을 의미한다. 언론사의 구조적 보도 시스템, 경영진의 판단 및 편집 정책 등이 명예훼손 언론소송에서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2) 언론사와 담당자 공동 피고(집단·개별 책임 병행)

언론사와 담당자(기자, PD 등)가 함께 피고로 지정된 건이 112건(26.7%)에 달했다. 이 경우, 조직과 해당 보도 작성자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 분쟁 발생 시 보도의 최종 결정권자와 실제 작성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으려는 원고의 취지를 반영한다. 전체 소송 중 약 4분의 1 이상이 조직과 개인의 ‘공동책임’ 체계로 진행되는 셈이다.

### (3) 담당자 단독(개별 책임 강조)

담당자 단독을 피고로 삼은 사례는 25건(6.0%) 있었다. 실제 기사를 작성한 기자나 방송 제작자 등 개별 인물에 책임을 묻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법적으로 특정 개인의 역할과 의사결정, 작성 과정의 과실이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중요한 구성이 된다.

(4) 대표·편집 책임자 단독 및 복합(경영진·최종결재자 책임)

발행인이나 대표이사 등 언론사의 최고경영자가 직접 피고가 되는 경우는, 조직 운영과 편집정책 결정권자의 법적 관리 책임을 강조하는 사건에서 자주 등장한다. 또한 대표, 편집 책임자, 담당자 등 다양한 직위가 동시에 피고로 포함된 복합 사건도 존재한다.

(5) 기타

실제 소송에서 다양한 직책(대표, 편집책임자, 담당 등)을 동시에 지정하거나, 외부 필자·제보자·라디오 진행자 등 비(非)언론사 구성원까지 특이하게 피고로 포함시키는 사례도 관찰됐다.

〈표 2-8〉 언론소송 피고 구성

언론소송 피고 구성	건수	비율(%)
언론사	211	50.4
언론사/담당	112	26.7
담당	25	6.0
대표	13	3.1
언론사/대표/담당	11	2.6
언론사/대표	10	2.4
대표/담당	6	1.4
언론사/편집국장/담당	6	1.4
언론사/대표/편집국장/담당	4	1.0
언론사/담당/비언론	3	0.7
담당/비언론	2	0.5
언론사/담당/기타	2	0.5
언론사/대표/담당/비언론	2	0.5
편집국장	2	0.5
편집국장/부장/담당	2	0.5
대표/편집국장	1	0.2
대표/편집국장/담당	1	0.2
비언론	1	0.2
언론사/대표/비언론	1	0.2
언론사/대표/편집국장/부장/담당	1	0.2

언론소송 피고 구성	건수	비율(%)
언론사/비언론	1	0.2
언론사/편집국장	1	0.2
언론사/편집위원(장)	1	0.2
합 계	419	100.0

명예훼손 언론소송에서 피고는 주로 언론사에 집중되지만, 기자·PD 등 개별 책임자에 대한 소송도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보도 과정의 다양한 인적 요소에 대한 책임 소재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언론사와 담당자를 공동 피고로 지정하는 사례가 많아, 보도 과정의 투명성, 내부 기록관리, 책임 분산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대표, 편집책임자 등 복수의 직위가 함께 피고가 되는 복합 소송도 늘어나며, 법적·윤리적 책임 구조가 복잡해지고 있다.

# 제3장

## 소송 결과

이 장에서는 2022~2024년 신고·확정된 명예훼손 언론소송 288건을 대상으로, 심급별 소송결과 뿐만 아니라 청구별·원고유형별·매체유형별로 분류하여 원고 승소율을 분석했다.

### 1. 심급별 최종 소송 결과

#### (1) 심급별 소송 결과

2022~2024년 확정된 명예훼손 언론소송 288건(사건 기준)을 심급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3-1>과 같다.

<표 3-1> 심급별 소송 결과

심급	원고승	원고패	총건수	원고 승소율(%)
1심	43	97	140	30.7
2심	36	50	86	41.9
3심	30	32	62	48.4
합 계	109	179	288	37.8

1심에서 확정된 140건 가운데 원고 승소가 43건으로, 승소율은 30.7%를 기록했다. 2심에서는 총 86건 중 원고가 승소한 건수가 36건으로, 승소율은 41.9%로 상승하였다. 3심은 전체 62건 중 원고 승소가 30건으로, 승소율은 48.4%에 이르렀다. 즉, 전체 판결 기준으로 원고가 승소한 경우는 109건이며, 전체 승소율은 37.8%이다.

심급별로 살펴보면, 상급심으로 올라갈수록 원고의 승소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1심에서 약 30%에 머물던 승소율은 2심에서 12%p 가까이 높아졌고, 3심에서는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상승하였다.

## (2) 연도별 심급별 승소율

〈표 3-2〉 연도별 심급별 승소율

심급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1심	30.2	30.4	31.7
2심	29.2	45.7	48.1
3심	62.5	41.7	45.5
전체 원고 승소율	35.5	38.1	40.0

〈표 3-2〉에 따르면, 2022~2024년 명예훼손 언론소송의 연도별 승소율은 심급이 올라갈수록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1심 승소율은 매년 30~31%대에서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으나, 2심 승소율은 2022년 29.2%에서 2023년 45.7%, 2024년 48.1%로 크게 상승했다. 3심 승소율은 2022년 62.5%로 일시적으로 높았다가 2023~2024년에는 40%대에서 안정되는 양상을 나타낸다. 전체 승소율은 2022년 35.5%, 2023년 38.1%, 2024년 40.0%이다.

## 2. 원고의 원심 판결 유지 여부

상소심에서 원심 판결의 57.4% 반복

〈표 3-3〉에 따르면, 2022~2024년 명예훼손 언론소송의 상소심(2·3심) 판결 148건 중, 원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된 경우는 62건(41.9%)으로 절반 이하의 비율을 보였다. 반면, 85건(57.4%)은 상소심에서 원심과 결론이 달라지는 번복이 발생했으며, 번복된 85건 중 78건(91.8%)은 원심에서 패소했던 피고가 상소 후 승소로 판결이 뒤집힌 사례였다. 이에 비해 원고가 원심에서 패소했으나 상급심에서 승소로 반복된 사례는 7건(4.7%)로 매우 적었다.

이러한 결과는 명예훼손 언론소송 사건에서 상소심의 법리 혹은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원심과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사건별 사실관계와 쟁점에 따라 상소를 통해 판결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높으며,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2·3심의 법리 및 사실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드러난다.

〈표 3-3〉 상소심의 원심 판결 유지여부

구분	건수	원심판결 유지		원심판결 번복		파기환송심
		원고승소판결 유지	원고패소판결 유지	원고승소판결 번복	원고패소판결 번복	
2심	86 (100.0)	29 (33.7)	2 (2.3)	47 (54.7)	7 (8.1)	1 (1.2)
3심	62 (100.0)	30 (48.4)	1 (1.6)	31 (50.0)	.	.
합 계	148 (100.0)	59 (39.9)	3 (2.0)	78 (52.7)	7 (4.7)	
		62 (41.9)		85 (57.4)		1 (0.7)

※ ( )안의 숫자는 %

### 3. 청구별 소송 결과

손해배상이 가장 많이 청구되나 전체 승소율은 31.3%

〈표 3-4〉는 288건의 명예훼손 언론소송 확정판결을 청구권별로 중복집계하여, 총 473건의 청구 결과를 분석한 통계이다. 전체 청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손해배상청구로, 247건(52.2%)을 기록했다. 이어 정정보도청구가 136건(28.8%), 반론보도청구 49건(10.4%), 기사삭제청구 39건(8.2%), 추후보도청구 2건(0.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추후보도청구는 모두 인용되어 원고 승소율이 100%였으나, 사례 수가 적어 이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주요 청구의 원고 승소율은 반론보도가 40.8%로 가장 높고 손해배상 32.0%, 정정보도 27.2%, 기사삭제 25.6%으로, 통상적으로 원고의 전체 청구 중 약 1/4~1/3만 인용되는 경향을 보였다. 전체 승소율은 31.3%로, 언론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확률은 3건 중 1건 정도임을 의미한다.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청구 빈도는 압도적으로 높지만 승소율은 평균에 근접(32.0%)해, 단일 소송에서의 실현 가능성에는 제한이 있음을 보여준다. 정정보도와 기사삭제는 인용률이 각각 27.2%, 25.6%로, 명예 회복 목적의 청구가 실제로 법원에서 인용되는 비율이 낮음을 시사(판결문상 허위 또는 침해 정도 판정이 엄격함)한다. 반론보도는 승소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정보도 대비 선택적 측면에서 원고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합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청구 중 68.3%가 기각되었고 31.3%만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청구별 소송 결과

청구구분	총 건수	인용	기각	각하	기각 및 각하	원고 승소율(%)
정정보도	136	37	97	1	1	27.2
반론보도	49	20	29			40.8
추후보도	2	2				100.0
기사삭제	39	10	29			25.6
손해배상	247	79	168			32.0
합 계	473	148	323	1	1	31.3

#### 4. 원고유형별 소송 결과

개인 원고(특히 일반인)와 공공단체의 승소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공적 인물별 승소율은 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

명예훼손 언론소송에서 원고가 개인인 경우, 일반인이 66.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승소율도 공적 인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5〉 참조). 공적 인물의 승소율이 낮은 것은 사법부가 공적 인물에 대한 수인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여 표현의 자유에 무게를 두는 경향과 연결된다. 단체가 원고인 판결 중에서는 국가기관(71.4%)과 공공단체(66.7%)의 승소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언론사·교육기관·시민단체는 승소 사례가 없었다. 종교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승소율은 각각 21.4%, 33.3%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38.8%)과 단체(36.4%)가 원고인 사건의 승소율은 각각 약 3~4건 중 1건에 해당하며, 이는 2023년 전체 민사사건의 원고 승소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5)

〈표 3-5〉 원고유형별 소송 결과

원고유형		사건수	원고 승소	원고 패소	원고 승소율(%)
개인	일반인	113	45	68	39.8
	공적 인물	57	21	36	36.8
	소 계	170	66	104	38.8
단체	기업	45	18	27	40.0
	기타 일반단체	20	8	12	40.0
	종교단체	14	3	11	21.4
	공공단체	9	6	3	66.7
	언론사	8	.	8	.
	교육기관	3	.	3	.
	국가기관	7	5	2	71.4
	지방자치단체	9	3	6	33.3
	시민단체	3	.	3	.
	소 계	118	43	75	36.4
합 계		288	109	179	37.8

5) 법원행정처, 『2024 사법연감』, 818면 참조. 민사본안사건의 심급별 처리결과에 따르면, 단독사건(소액사건 포함)의 1심 원고 승소율(일부 승소 포함)은 55.8%로 집계되었으며, 합의사건의 1심 원고 승소율은 41.6%로 나타났다.

〈표 3-6〉 공적 인물 유형별 원고 승소율

공적 인물 유형	사건수	원고 승소	원고 패소	원고 승소율(%)
정치인	25	6	19	24.0
고위공직자	18	11	7	61.1
유명 언론인	4	2	2	50.0
유명 기업인	1	-	1	-
유명 연예인	2	-	2	-
유명 예술·체육인	1	-	1	-
기타 유명인	6	2	4	33.3
합 계	57	21	36	36.8

〈표 3-6〉에 따르면, 공적 인물 유형별 원고 승소율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정치인은 가장 많은 사건 수(25건)를 기록하지만 승소율은 24%에 그쳐, 정치인이 청구한 소송에 대해 법원은 언론의 비판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함을 알 수 있다. 반면, 고위공직자는 18건 중 11건(승소율 61.1%)이 인용되어 허위사실이나 신상 침해에 대해 더욱 엄격히 판단하는 경향이 드러난다.

유명 언론인은 사건 4건 중 2건에서 승소해 승소율이 50%였다. 반면, 유명 기업인(1건), 유명 연예인(2건), 유명 예술·체육인(1건)은 모두 패소해 승소율이 0%였고, 기타 유명인은 승소율이 33.3%였다. 구체적으로 유력 언론사 사주와 유명 언론인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했고, 유명 목사에 대한 소송은 원고가 패소했다.

전체 공적 인물 유형의 승소율은 36.8%로 집계되었다. 이 중 정치인의 승소율이 가장 낮았으며, 언론인과 기타 유명인 등 대중에 노출되는 집단의 승소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사례 수가 적어 이러한 결과를 전체적인 경향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5. 매체유형별 소송 결과

인터넷신문에서 명예훼손 언론소송이 가장 빈번하고 승소율도 평균보다 높아

### (1) 인터넷신문

인터넷신문의 사건수(240건)는 다른 매체 유형에 비해 많으며, 전체의 57%에 달한다. 승소율은 43.3%로 전체 평균(38.2%)보다 높다. 그 배경에는 정보유통의 신속성 및 광범위성, 사실 검증 부족, 익명성 등 인터넷 언론이 가진 구조적 위험성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 (2) 신문

신문은 사건 수(79건)로 매체유형 중 두 번째로 많으나, 승소율은 25.3%로 다른 매체유형에 비해 낮은 편에 속한다. 법원은 전통매체인 신문이 타 매체에 비해 승소율이 낮은 이유에 대하여, 신문의 경우 취재·편집 과정에서 '데스킹'이 보다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적 관심사와 관련하여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3) 방송

방송 역시 상당한 사건 수(76건)가 집계되었으나, 승소율(23.7%)은 전체 매체 중 가장 낮은 편이다. 방송의 공적 성격, 사회적 영향력, 표현의 자유가 법원에서 더 강하게 인정되면서, 원고가 실제로 법적 구제를 받기는 더 어렵다. 방송의 경우, 제작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과 데스킹 절차,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는 내용에 대한 사전 법률 검토 등이 이루어진다. 또한, 공익적 목적 수행이라는 사회적 책무와 그에 따른 비판·규제의 영향으로 방송 내용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 (4) 잡지·뉴스통신

두 매체 모두 사례 수(잡지 6건, 뉴스통신 4건)가 적은 소수 표본이다. 승소율(각각 50%)은 높게 나타나지만, 표본의 제한 때문에 통계적으로 전체 경향을 대표하기는 어렵다. 실제 사건별로 특수성이 강할 수 있고, 사안별 판단이 승소율을 좌우한 것으로 보인다.

〈표 3-7〉 매체유형별 소송 결과

매체유형	사건수	원고 승소	원고 패소	승소율(%)
인터넷신문	240	104	136	43.3
신 문	79	20	59	25.3
방 송	76	18	58	23.7
잡 지	6	3	3	50.0
뉴스통신	4	2	2	50.0
불 명	14	13	1	92.9
합 계	419	160	259	38.2

인터넷신문의 소송 빈도와 승소율이 모두 높아 분쟁의 중심축이 온라인 매체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명예훼손 언론소송의 원고 승소율은 40% 미만에 그쳐, 실질적 권리구제의 장벽이 높은 현실이 자료로 확인된다.

## 제4장

# 손해배상청구 사건

명예훼손 언론소송에서 원고가 가장 선호하는 피해구제 방식은 손해배상청구이다.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를 전제로 성립하는 청구권으로서 법적 성격이 명확하다.

이에 위원회는 청구권별로 분류된 사건 중 손해배상청구 사건만을 별도로 추출하여 다음 항목을 분석했다.

〈표 4〉 손해배상청구 사건 세부 통계 분석항목

구분	내용
원고 승소율	전체 손해배상청구 사건 중 원고 승소(일부/전부) 사건 비율
청구액	사건 전체 청구액 합산, 평균값, 중앙값 <sup>6)</sup> , 최빈값 <sup>7)</sup>
인용액 및 인용액 분포	승소 사건의 인용액에 대해 평균값, 중앙값 최빈값 및 인용액 분포
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액	원고유형별, 매체유형별, 언론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결과
손해배상 인용 사유	구체적 인용사유 명시
손해배상 기각 사유	일반적 유형(위법성 부인, 사실적시 인정, 공공의 이익 등) 명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청구액과 인용액을 분석할 때, 소수의 이례적 최고액 또는 최저액 사건이 평균값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균값 외에 중앙값과 최빈값을 함께 산출했다.

원고가 다수인 경우에는 사건 전체의 총 청구액과 총 인용액을 합산하여 분석하고, 피고가 다수인 경우에는 피고를 매체별로 구분한 뒤, 매체별 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분석했다. 피고가 언론인인 경우는 해당 언론인이 소속된 매체의 청구액·인용액에, 언론인 개인에 대한 청구액을 합산하여 금액을 산출하였다. 제4장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분석은 각 확정판결에 대해 매체별로 세분화하여 입력한 데이터(419건)를 토대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데이터 왜곡을 줄임으로써,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6) 중앙값이란 사례를 순위대로 배열하여 사례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한 가운데에 위치한 사례의 액수를, 짝수인 경우에는 한가운데 위치한 두개 값의 평균을 말한다.

7) 최빈값은 전체 사례 중 건수가 가장 많은 값이다.

## 1. 손해배상청구 사건 소송 결과

최근 3년간 명예훼손 언론소송 사건에서 손해배상청구가 전체의 84%, 승소율 31.8%

최근 3년간 명예훼손 언론소송 사건에서 손해배상청구의 승소율은 평균 31.8%로, 법원이 전체 청구 중 약 3건당 1건만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2년 30.1%, 2023년 31.4%, 2024년 34.3%로 승소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해, 원고의 피해구제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를 알 수 있다. 또한 전체 매체별 확정판결 419건 중 손해배상청구 건수는 352건(약 84%)에 달해, 손해배상이 명예훼손 언론소송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주요 구제수단임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 4-1〉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 원고 승소율

연도	전체청구건	손배청구건	원고 승소	원고 승소율(%)
2022	137	113	34	30.1
2023	162	137	43	31.4
2024	120	102	35	34.3
합 계	419	352	112	31.8

## 2. 청구액

손해배상 청구액 평균적으로 꾸준히 상승했지만, 중앙값과 최빈값은 훨씬 낮아 원고가 현실적인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표 4-2〉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명예훼손 언론소송에서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평균적으로 꾸준히 상승하여 2022년 8,250만 원, 2023년 8,480만 원, 2024년 9,660만 원을 기록했다. 이는 원고들이 해마다 더욱 높은 금액을 청구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중앙값은 2022년 3,000만 100원, 2023년 3,100만 원, 2024년 3,000만 원으로, 평균액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일부 고액 청구가 전체 평균을 끌어올린 결과로, 실제로는 대다수 사건의 청구액이 평균보다 훨씬 낮은 분포를 띠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빈값 또한 2022년 1억 원, 2023년 5,000만 원, 2024년 1,000만 원 등으로 최근 들어 다수 사건의 청구액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원고들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의 비교적 현실적인 금액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저액과 최고액 역시 매년 다양한 수준으로 산정되고 있으나, 최고액은 3년 내내 10억 원 안팎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표 4-2〉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청구액 현황

(단위: 원)

연도	건수	평균액	중앙값	최빈값	최저액	최고액
2022	113	82,500,003	30,000,100	100,000,000	2,500,000	1,000,000,000
2023	137	84,805,850	31,000,000	50,000,000	500,000	1,007,000,000
2024	102	96,639,801	30,000,000	10,000,000	5,000,000	1,000,000,000
합 계	352	87,494,777	30,000,100	10,000,000	500,000	1,007,000,000

※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이러한 통계는 최근 손해배상 청구액이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실제 다수 사건의 금액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집중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즉, 소수의 고액 청구가 전체 평균을 크게 높이는 구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원고들이 현실적이고 표준적인 규모로 피해구제를 청구하는 경향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

### 3. 인용액

매체별 손해배상 평균 인용액 약 854만 원, 인용 최고액 5천만 원

최근 3년간 명예훼손 언론소송에서의 손해배상 인용액은 평균 593만 원(2022년)에서 855만 원(2023년), 1,021만 원(2024년)으로 해마다 뚜렷하게 상승해, 사법부의 인용액 기준이 꾸준히 상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앙값 역시 285만 원에서 300만 원, 500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높아지며, 법원이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인용 규모 자체가 점점 커지는 경향이 확인된다. 최빈값은 2022년 100만 원, 2023년 300만 원, 2024년 1,000만 원 등으로 변화폭이 크지만, 최근에는 1,000만 원대 인용액 판결이 증가했다.

최저 인용액은 2022~2023년 50만 원, 2024년 100만 원으로 저액 판결도 여전히 일부 존재하나, 최고액은 3년 모두 3,9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표 4-3〉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인용액 현황

(단위: 원)

연도	건수	평균액	중앙값	최빈값	최저액	최고액
2022	34	5,932,353	2,850,000	1,000,000	500,000	39,000,000
2023	43	8,551,112	3,000,000	3,000,000	500,000	50,000,000
2024	35	10,214,286	5,000,000	10,000,000	1,000,000	50,000,000
합 계	112	8,275,873	3,500,000	3,000,000	500,000	50,000,000

※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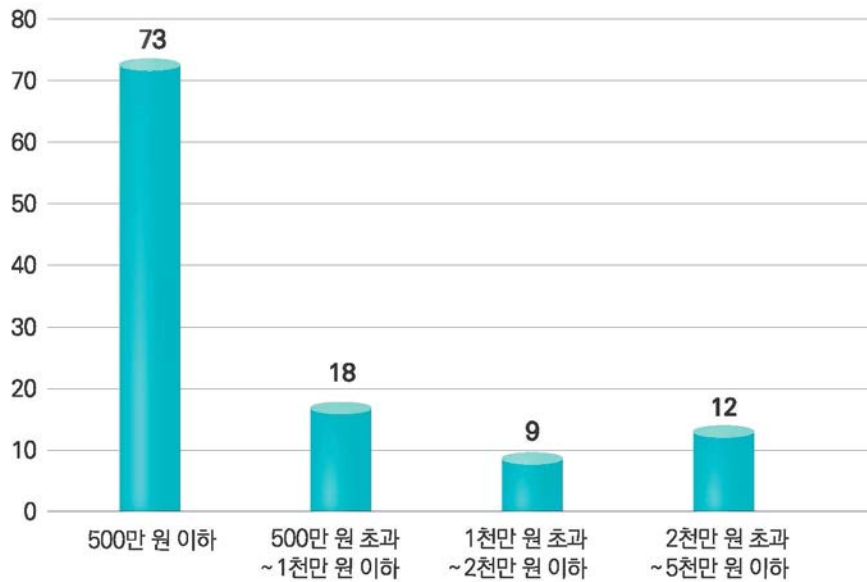
이러한 분석 결과는 손해배상 인용액의 전반적 상승과 함께 소액 판결의 비중이 줄고, 실질적 피해구제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의 일부 고액 인용 판결이 평균값을 왜곡하던 경향이 줄어들고, 인용액의 금액 수준이 전체적으로 상향하는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 4. 인용액 분포

손해배상 인용액 500만 원 이하 65.2%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된 판결 112건 중 500만 원 이하가 73건(65.2%)으로 가장 많았으며, 500만 원 초과 1천만 원 이하가 18건(16.1%),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가 9건(8.0%),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가 12건(10.7%)으로 집계되었다. 인용 최고액은 5천만 원이었고, 대부분의 판결에서 소액(500만 원 이하)의 인용이 이루어졌다.

〈표 4-4〉 손해배상 인용액 분포



손해배상 인용액	건수	비율
500만 원 이하	73	65.2
500만 원 초과 ~ 1천만 원 이하	18	16.1
1천만 원 초과 ~ 2천만 원 이하	9	8.0
2천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	12	10.7
합 계	112	100.0

## 5. 원고유형별 손해배상 승소율 및 인용액

일반인 손해배상 승소율 가장 높고, 공적인물 인용액 높아

원고유형별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전체 승소율은 32%로, 유형별 편차는 있으나 대부분 20~40% 사이에 분포한다. 개인 원고 중에서는 일반인의 승소율이 39.4%로 가장 높고, 공적 인물은 28.3%로 낮은 편이다. 단체 원고는 공공단체(40.0%), 기업체(28.2%), 기타 일반단체(31.3%), 종교단체(18.2%) 순으로 나타났다.

단체 원고의 경우(특히 기업체·종교단체) 인용액 평균값과 중앙값이 개인보다 대체로 높으며, 종교단체는 평균과 중앙값이 모두 1,850만 원으로 고액 판결이 가능하지만 사례 수는 적다. 개인 원고 중 공적 인물의 인용액 평균·중앙값은 일반인보다 높아, 사회적 지위가 배상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확인된다. 전체 평균 인용액은 약 1,016만 원, 중앙값은 약 525만 원으로, 소수의 고액 판결이 전체 평균을 끌어올리는 구조임을 보여준다.

〈표 4-5〉 원고유형별 손해배상청구 승소율 및 인용액

원고유형		손배청구건수	인용	승소율(%)	인용액 평균값(원)	인용액 중앙값(원)
개인	일반인	109	43	39.4	7,502,223	5,000,000
	공적 인물	53	15	28.3	12,033,333	10,000,000
단체	언론사	6	.	.	.	.
	국가기관	1	1	100.0	1,000,000	1,000,000
	지방자치단체	2	.	.	.	.
	기업체	39	11	28.2	17,636,364	10,000,000
	공공단체	5	2	40.0	4,750,000	4,750,000
	종교단체	11	2	18.2	18,500,000	18,500,000
	시민단체	3	.	.	.	.
	교육기관	2	.	.	.	.
	기타 일반단체	16	5	31.3	12,200,000	6,000,000
합 계		247	79	32.0	10,163,723	5,250,000

〈표 4-6〉 공적 인물의 손해배상청구 승소율 및 인용액

공적 인물 유형	손배청구건수	인용	승소율(%)	인용액 평균값(원)	인용액 중앙값(원)
정치인	22	6	27.3	10,000,000	10,000,000
고위공직자	17	6	35.3	9,833,333	10,000,000
유명 언론인	4	1	25.0	1,500,000	1,500,000
유명 기업인	1	.	.	.	.
유명 연예인	2	.	.	.	.
유명 예술·체육인	1	.	.	.	.
기타 유명인	6	2	33.3	30,000,000	30,000,000
합 계	53	15	28.3	12,033,333	10,000,000

공적 인물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승소율은 28.3%로 나타났으며, 이는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은 그 제한이 더 완화되어야 한다는 기존 판례와 그 궤를 같이한다. 다만, 고위공직자 그룹은 승소율이 35.3%로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표본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는 제한적이다. 인용액의 평균과 중앙값 차이는 크지 않지만, 기타 유명인 사례가 평균값을 높인 영향이 있어 실제로는 대부분 1천만 원 수준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명 기업인, 유명 연예인, 유명 예술·체육인 그룹은 승소 사례가 없어 통계적 해석이 어렵다. 전반적으로 각 그룹의 표본 수가 적어 평균 및 승소율 해석에는 한계가 있으며, 인용액은 사건의 특수성, 피해 정도, 인물의 사회적 영향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6. 매체유형별 손해배상 승소율 및 인용액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인용액은 대부분 300만~400만 원대에 집중

〈표 4-7〉의 분석 결과, 매체 유형별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전체 승소율은 약 32%로 확인되었다. 이는 손해배상청구가 전 매체 유형에 걸쳐 쉽게 인용되지 않는 경향을 시사한다. 인용액의 평균값은 약 827만 원, 중앙값은 350만 원으로, 양자 간의 차이는 일부 고액 판결(특히 방송, 뉴스통신사)의 영향으로 평균값이 상승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러한 편향을 고려할 때, 실제 인용액은 대부분 300만 원에서 400만 원 범위에 집중되며, 중앙값이 보다 대표적인 지표로 평가된다.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문(일간·주간)의 승소율은 각각 14~19% 수준에 불과하며, 승소 시 평균 인용액 역시 200만 원대에서 600만 원대 수준에 머물렀다. 방송은 평균 인용액이 상대적으로 높으나(2,300만 원), 승소율이 13.6%로 낮다는 점을 볼 때, 고액 청구 사건이 집중되면서 인용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인터넷신문의 전체 승소율은 37.1%로 타 매체유형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4-7〉 매체유형별 손해배상청구 사건 원고 승소율 및 인용액

매체유형		건수	원고승	승소율(%)	인용액 평균값(원)	인용액 중간값(원)
신문	일간	35	5	14.3	6,800,000	4,000,000
	주간	26	5	19.2	2,800,000	1,500,000
	불명	6	2	33.3	4,500,000	4,500,000
방송		59	8	13.6	23,000,000	25,000,000
잡지		3	1	33.3	1,500,000	1,500,000
뉴스통신		4	2	50.0	14,000,000	14,000,000
인터넷신문	독립형	69	34	49.3	10,611,765	6,000,000
	언론사닷컴	108	30	27.8	7,153,260	4,000,000
	불명*	28	12	42.9	5,291,667	3,000,000
불명**		14	13	92.9	1,346,154	1,000,000
합 계		352	112	31.8	8,275,873	3,500,000

\* 판결문 상 원고 매체유형은 인터넷신문이지만, 세부 유형(독립형 또는 언론사닷컴)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판결문 상 원고 매체유형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7. 언론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결과

언론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확률 60.6%, 연도별 변동 폭이 커

매체별 손해배상청구 353건(〈표4-7〉 참조) 중, 언론인(대표, 편집국장, 담당기자 등)을 단독 피고로 하거나 공동 피고로 포함한 사건은 총 170건으로 전체의 52.1%를 차지한다. 이 중 손해배상 인정 건수는 67건(39.4%), 면책 건수는 103건(60.6%)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3년 인정률이 2022년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가, 2024년에는 약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면책률은 2022~2023년 상승세를 보였으나, 2024년에는 처음으로 50% 미만으로 떨어졌다.

전체적으로 언론인 대상 손해배상청구의 다수(60.6%)가 법적 책임을 인정받지 않고 면책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법원이 언론인의 보도 행위에 대해 폭넓은 책임 면제를 인정하는 현실을 반영한다. 다만, 연도별 인정률의 변동 폭이 큰 점은 사회·정치적 이슈, 판례 경향 등 외부 요인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2024년 인정률과 면책률이 모두 50%대에 근접한 것은 판례 경향 변화 또는 사건 성격의 다변화를 의미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평균 승소율(인정률)은 39.4%로 나타났다.

〈표 4-8〉 언론인 상대 손해배상청구 결과

연도	총 손해건수	손배 책임 인정	손배 면책
2022	55	21	34
2023	54	15	39
2024	61	31	30
합 계	170	67	103

## 8. 손해배상청구 인용 사유

손해배상청구에서 상위 5개 복합 인용 사유가 전체의 69.6% 차지

2022~2024년 매체별로 분류한 손해배상청구 352건 중 인용된 112건을 대상으로 인용 사유를 분석하면, 상위 5개 사유가 전체의 64.3%를 차지한다. 비율이 높은 순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평가 저하/공익 인정/허위보도/상당성 부정(16.1%), 사회적 평가 저하(14.3%), 허위보도(14.3%), 허위보도/상당성 부정(10.7%), 사회적 평가 저하/허위보도/상당성 부정(8.9%)로 나타난다. 주로 복합적 인용 사유의 빈도와 비율이 높는데, 이는 법원이 인용 판단 시 단일 원인보다는 구체적 사정의 중첩성을 중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외에도 허위보도, 사회적 평가 저하, 상당성 부정, 공익 인정/부정 등이 결합된 사례가 대부분이다. 기타 사유는 전체의 4.5%로, 다양한 개별적 상황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표 4-9〉 손해배상청구 인용 사유

인용 사유	건수	비율(%)
사회적 평가 저하/공익 인정/허위보도/상당성 부정	18	16.1
사회적 평가 저하	16	14.3
허위보도	16	14.3
허위보도/상당성 부정	12	10.7
사회적 평가 저하/허위보도/상당성 부정	10	8.9
공익 인정/허위보도/상당성 부정	9	8.0
사회적 평가 저하/상당성 부정	5	4.5
공익 부정/허위보도/상당성 부정	4	3.6
상당성 부정	3	2.7
공익 부정/상당성 부정	2	1.8
공익 부정/허위보도	2	1.8
상당성 부정/기타	2	1.8
공익 부정/기타	1	0.9
공익 인정	1	0.9
공익 인정/상당성 부정/기타	1	0.9
공익 인정/허위보도	1	0.9
사회적 평가 저하/공익 부정	1	0.9

인용 사유	건수	비율(%)
사회적 평가 저하/공익 부정/허위보도/상당성 부정	1	0.9
사회적 평가 저하/공익 인정	1	0.9
사회적 평가 저하/공익 인정/상당성 부정	1	0.9
기타	5	4.5
합 계	112	100.0

## 9. 손해배상청구 기각 사유

공익성, 진실성 및 진실상당성 인정이 기각 사유의 과반 이상 차지

2022~2024년 매체별로 분류한 손해배상청구 352건 중 기각된 240건을 분석한 결과, 상위 3개 기각 사유인 공익성/진실성/상당성(24.6%), 진실성(19.6%), 공익성/진실성(12.9%)이 전체의 57.1%를 차지하였다.

다수의 기각 사유는 단일 원인보다는 공익성/진실성, 진실성/상당성 등 복수 요인의 결합 형태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평가 저하 없음'(5.8%), '사실적시 없음'(5.0%) 등 명예훼손 요건 자체를 부인하는 사유도 주요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공익성/진실성/상당성이 결합된 사유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 법원이 명예훼손 소송을 기각할 때 단일 기준보다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요건 심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확인된다.

〈표 4-10〉 손해배상청구 기각 사유

기각 사유	건수	비율(%)
공익성/진실성/상당성	59	24.6
진실성	47	19.6
공익성/진실성	31	12.9
사회적 평가 저하 없음	14	5.8
공익성/상당성	13	5.4
사실적시 없음	12	5.0
사실적시 없음/공익성/진실성	8	3.3
사실적시 없음/진실성	8	3.3
공익성	6	2.5
사실적시 없음/공익성	4	1.7
사실적시 없음/공익성/진실성/상당성	4	1.7
사회적 평가 저하 없음/공익성/진실성/상당성	4	1.7
사회적 평가 저하 없음/진실성	3	1.3
당사자 불특정/사실적시 없음/진실성	2	0.8
사회적 평가 저하 없음/공익성/상당성	2	0.8
사회적 평가 저하 없음/공익성/진실성	2	0.8
상당성	2	0.8

기각 사유	건수	비율(%)
진실성/기타	2	0.8
당사자 불특정/사회적 평가 저하 없음/공익성/진실성	2	0.8
당사자 불특정/사회적 평가 저하 없음	1	0.4
사실적시 없음/기타	1	0.4
사실적시 없음/사회적 평가 저하 없음/공익성	1	0.4
사실적시 없음/사회적 평가 저하 없음/공익성/진실성/상당성	1	0.4
사실적시 없음/진실성/상당성	1	0.4
기타	10	4.2
합 계	240	100.0

## 제5장

# 정정 · 반론 · 추후보도청구 · 기사삭제 사건

### 1. 정정보도 및 병합청구 사건 소송 결과

손해배상 · 기사삭제 · 반론보도 등 복합청구가 79.3%

정정보도청구만 한 경우는 10.8%에 불과

제5장 정정 · 반론 · 추후보도청구 및 기사삭제 사건의 분석도 제4장과 마찬가지로, 각 확정판결에 대해 매체별로 세분화하여 입력한 데이터(419건)를 토대로 진행하였다.

손해배상 · 기사삭제 등 금전적 또는 실질적 권리구제 수단이 정정보도와 함께 청구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복합청구(병합청구)는 전체의 79.3%를 차지한다. 단일 청구인 정정보도만은 전체의 10.8%에 불과해, 보도 정정과 함께 금전적 구제를 병행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정정보도를 청구한 전체 213건 중 손해배상청구가 결합된 사건은 166건<sup>8)</sup>(77.9%)이고, 이 중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병합 청구한 사례가 53.1%로 압도적으로 많다. 금전 청구 없이 정정보도만(23건, 10.8%) 청구하거나 정정보도 · 반론보도만(24건, 11.3%) 청구한 사건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기사삭제와 병합된 유형(정정보도/손해배상/기사삭제, 정정보도/반론보도/손해배상/기사삭제 등)은 20건(9.4%)이며 반론보도 포함 병합청구는 61건<sup>9)</sup>(28.6%)으로 나타났다. 기사삭제, 반론보도 등 권리구제 수단의 병합은 피해구제 방식이 지속적으로 다양화 · 복합화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8) 정정보도/손해배상(113건)+정정보도/반론보도/손해배상(33건)+정정보도/손해배상/기사삭제(16건)+정정보도/반론보도/손해배상/기사삭제(4건) = 166건

9) 정정보도/반론보도/손해배상(33건)+정정보도/반론보도(24건)+정정보도/반론보도/손해배상/기사삭제(4건)=61건

〈표 5-1〉 정정보도 및 병합청구 현황

구분	건수	비율(%)
정정보도/손해배상	113	53.1
정정보도/반론보도/손해배상	33	15.5
정정보도/반론보도	24	11.3
정정보도	23	10.8
정정보도/손해배상/기사삭제	16	7.5
정정보도/반론보도/손해배상/기사삭제	4	1.9
합 계	213	100.0

〈표 5-2〉 최근 3년간 정정보도청구 원고 승소율

연도	전체 청구건수	정정보도 청구건수	원고 승소	승소율(%)
2022	137	68	17	25.0
2023	162	87	18	20.7
2024	120	58	14	24.1
합 계	419	213	49	23.0

〈표 5-2〉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정정보도청구의 원고 승소율은 평균 23.0%로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체 소송의 약 4분의 1만 법원에서 인용됨을 의미하며, 정정보도 인용 기준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도별로는 2023년에 승소율이 20.7%로 하락했다가 2024년 24.1%로 소폭 상승하는 등 비교적 일관된 수준에서 소규모 변동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사건 특성이나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일시적인 등락이 발생할 수 있으나, 판례나 외적 요인에 의한 급격한 변화는 드물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정정보도청구는 전체 청구건수(419건)의 약 절반(50.8%, 213건)을 차지하며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주요 구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실제 인용률은 낮은 편이다.

## 2. 정정보도청구 기각 사유

정정보도청구 사건의 주된 기각 사유는 ‘보도의 진실성’

정정보도청구 사건 중 원고 패소(기각) 사례 163건<sup>10)</sup>을 분석한 결과, 보도의 ‘진실성’ 인정을 이유로 기각된 사건이 94건(57.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실적 주장 아님’이 17건(10.4%), ‘사실적 주장 아님/진실성’이 16건(9.8%)을 차지해, 상위 3개 사유가 전체의 77.9%를 구성하였다.

또한, 복합 사유(예: ‘사실적 주장 아님/진실성’, ‘지엽말단/진실성’, ‘진실성/위법성 조각’)는 30건(18.4%)으로, 법원이 기각 판단 시 단일 기준뿐 아니라 복수의 판단 요소를 중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 정정보도청구 기각 사유

기각 사유	건수	비율(%)
진실성	94	57.7
사실적 주장 아님	17	10.4
사실적 주장 아님/진실성	16	9.8
지엽말단/진실성	8	4.9
진실성/위법성 조각	6	3.7
개별적 연관성 부정/진실성	5	3.1
개별적 연관성 부정	3	1.8
위법성 조각	3	1.8
개별적 연관성 부정/지엽말단/진실성	2	1.2
지엽말단/정정보도문이 원보도와 관련없음/진실성	2	1.2
사실적 주장 아님/지엽말단	1	0.6
정정보도문이 원보도와 같음	1	0.6
지엽말단	1	0.6
기 타	4	2.5
합 계	163	100.0

10) 〈표 5-2〉 최근 3년간 정정보도청구 원고 승소율(매체별) 자료에 따르면, 정정보도청구 총 건수에서 인용 49건을 제외하면 164건이나, 이 중 각하 사건 1건을 포함하고 있어 실제 기각 건수는 163건이다.

### 3. 반론보도 및 병합청구 사건 소송 결과

반론보도청구는 정정보도·손해배상 등과 복합청구 많아

〈표 5-4〉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반론보도 및 병합청구 소송(82건) 중 76.8%(63건)는 정정보도, 손해배상 등과 결합된 복합청구 형태로 이루어져, 복수의 권리구제 수단을 병합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반론보도만(19건, 23.2%) 또는 정정보도/반론보도(24건, 29.3%) 등 보도계재만을 구하는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어, 실제 피해구제 실무에서는 금전적 배상과 명예회복을 동시에 추구하는 청구가 중심축을 이룬다.

손해배상과 결합된 반론보도 청구도 39건<sup>11)</sup>(47.6%)에 달해, 전체 반론보도 소송 중 절반 가량이 금전적 피해구제를 포함한다. 기사삭제까지 병합해 다양한 권리구제 방안을 함께 제기하는 사례는 드물지만 꾸준히 존재한다. 이는 원고가 경제적 배상과 명예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를 병행하여 청구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표 5-4〉 반론보도 및 병합청구 현황

구분	건수	비율(%)
정정보도/반론보도/손해배상	33	40.2
정정보도/반론보도	24	29.3
반론보도	19	23.2
정정보도/반론보도/손해배상/기사삭제	4	4.9
반론보도/손해배상	2	2.4
합 계	82	100.0

〈표 5-5〉에 따르면, 전체 사건 중 반론보도청구는 82건(19.6%)으로, 정정보도청구에 비해 비중이 낮다. 최근 3년간 반론보도청구 건수는 매년 22~36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론보도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율은 2022년 25.0% → 2023년 38.9% → 2024년 50.0%로 매년 꾸준히 상승했으며, 3년 평균은 37.8%로 정정보도청구 원고 승소율 평균(23.0%)보다 높다. 이는 법원이 반론보도청구에 대해 비교적 완화되고 포용적인 인용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11) 정정보도/반론보도/손해배상(33건)+정정보도/반론보도/손해배상/기사삭제(4건)+반론보도/손해배상(2건)=39건

〈표 5-5〉 최근 3년간 반론보도청구 원고 승소율

연도	전체 청구건수	반론보도 청구건수	원고 승소	승소율(%)
2022	137	24	6	25.0
2023	162	36	14	38.9
2024	120	22	11	50.0
합 계	419	82	31	37.8

#### 4. 반론보도청구 기각 사유

반론보도청구 기각사유는 지엽말단과 사실적 주장성 결여가 많아

반론보도청구 사건 중 원고 패소(기각) 사례 51건을 분석한 결과, ‘지엽말단’이 단독 사유로 19.6%를 차지했다. 이는 원고가 요구하는 반론보도가 원문 기사에 보도된 내용의 핵심과 무관하고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어 공정한 여론 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사실적 주장 아님’(13.7%)과 사실적 주장성 결여가 결합된 사유도 주요 비중을 차지해, 반론보도 대상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논평, 혹은 추정 보도일 경우 기각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반론보도문 및 원보도 관련성에 관한 사유(반론보도문이 사실에 반함, 원보도와 동일·무관 등)도 3.9~9.8% 범위에서 꾸준히 나타나, 법원이 판단 시 반론의 내용과 원보도와의 관련성을 함께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6〉 반론보도청구 기각 사유

기각 사유	건수	비율(%)
지엽말단	10	19.6
사실적 주장 아님	7	13.7
지엽말단/반론보도문이 사실에 반함	6	11.8
반론보도문이 사실에 반함	5	9.8
개별적 연관성 부정/반론보도문이 사실에 반함	2	3.9
반론보도문이 원보도와 같음	2	3.9
반론보도문이 원보도와 관련 없음	2	3.9
사실적 주장 아님/기타	2	3.9
사실적 주장 아님/지엽말단/반론보도문이 원보도와 같음	2	3.9
사실적 주장 아님/지엽말단/반론보도문이 원보도와 관련 없음	2	3.9
사실적 주장 아님/지엽말단	1	2.0
기타	10	19.6
합 계	51	100.0

## 분석 판결 목록(502건)

※ 동일사건순

번호	판결번호	선고일자	법원명	심급	청구명	결과
1	2020가합598794	2022-01-12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2	2021가단5057939	2022-01-12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인용
3	2022나6217	2022-07-19	서울중앙지법	2심	손배	인용
4	2022다265031	2022-11-17	대법원	3심	손배	인용
5	2020가합1924	2021-07-07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인용
6	2021나2027421	2022-01-14	서울고법	2심	손배	인용
7	2020가합101288	2020-12-10	서울남부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8	2021나2002804	2022-01-14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인용
9	2022다215913	2022-06-24	대법원	3심	정정/손배	인용
10	2019가합652	2020-12-11	서울동부지법	1심	손배	기각
11	2021나2004299	2022-01-14	서울고법	2심	손배	기각
12	2020가단5073576	2021-01-15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기각
13	2021나11373	2022-01-19	서울중앙지법	2심	손배	기각
14	2022다215234	2022-05-26	대법원	3심	손배	기각
15	2019가합105611	2022-01-20	서울남부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16	2020가합117474	2022-01-20	서울남부지법	1심	손배	기각
17	2020가단5282172	2022-01-21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기각
18	2022나7272	2022-10-14	서울중앙지법	2심	손배	기각
19	2021가합31842	2022-01-21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20	2022나2007318	2023-03-17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기각
21	2023다227531	2023-06-16	대법원	3심	정정/손배	기각
22	2020가단5210238	2022-01-21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인용
23	2022나6934	2023-02-14	서울고법	2심	손배	인용
24	2023다223379	2023-06-17	대법원	3심	손배	인용
25	2019가합39720	2020-11-25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26	2020나2047923	2022-01-21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인용
27	20220다215876	2022-05-26	대법원	3심	정정/손배	인용
28	2021가단206038	2022-01-25	서울서부지법	1심	손배	기각
29	2020가합42883	2022-01-26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	기각
30	2022나2007295	2023-02-16	서울고법	2심	정정	기각
31	2021가합102103	2022-01-27	서울남부지법	1심	반론	기각
32	2020가단123340	2022-02-09	인천지법 부천지원	1심	손배	기각
33	2020가합596897	2021-06-02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번호	판결번호	선고일자	법원명	심급	청구명	결과
34	2021나2022457	2022-02-11	서울고법	2심	손배	인용
35	2022다222836	2022-06-17	대법원	3심	손배	인용
36	2018가합40419	2019-11-27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37	2020나2000153	2022-02-24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기각
38	2019가단249100	2022-03-18	서울서부지법	1심	손배	인용
39	2022나42416	2024-01-19	서울서부지법	2심	손배	기각
40	2021가단220726	2022-03-24	인천지법	1심	손배	기각
41	2021가합774 2021가합781(병합)	2022-03-31	대구지법	1심	반론	인용
42	2021가단200345	2022-04-05	서울남부지법	1심	손배	기각
43	2022나56041	2022-11-25	서울남부지법	2심	손배	기각
44	2018가합587562	2021-09-08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기각
45	2021나2035620	2022-04-08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기사삭제	기각
46	2022다231168	2022-08-11	대법원	3심	정정/손배/기사삭제	기각
47	2020가합490	2021-04-09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	인용
48	2021나2014883	2022-04-08	서울고법	2심	정정	인용
49	2022다231151	2022-07-18	대법원	3심	정정	인용
50	2020가합111186	2021-09-30	서울남부지법	1심	손배/기사삭제	기각
51	2021나2039912	2022-04-08	서울고법	2심	손배/기사삭제	기각
52	2020가합117603	2022-04-14	서울남부지법	1심	추후/손배	인용
53	2020가합109022	2021-11-04	서울남부지법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인용
54	2021나2047715	2022-04-15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인용
55	2021가소30864	2021-06-24	수원지법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1심	손배	인용
56	2021나79650	2022-04-20	수원지법	2심	손배	인용
57	2022다233225	2022-12-16	대법원	3심	손배	인용
58	2020가합35083	2021-08-13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	기각
59	2021나2040158	2022-04-22	서울고법	2심	정정	기각
60	2022다233362	2022-08-22	대법원	3심	정정	기각
61	2020가단5290081	2022-04-27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기각
62	2022나23977	2022-09-23	서울중앙지법	2심	손배	기각
63	2020가합12612	2022-04-27	청주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64	2021가단92734	2022-04-28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1심	손배	기각
65	2021가합30146	2021-08-20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66	2021나2037428	2022-04-29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기각
67	2020가합588353	2022-04-29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기각
68	2020가단57180	2022-05-11	광주지법 목포지원	1심	손배	인용
69	2019가단124533	2022-05-18	대전지법	1심	손배	기각

번호	판결번호	선고일자	법원명	심급	청구명	결과
70	2021가단125	2022-05-18	서울남부지법	1심	손배	기각
71	2021가합519460	2022-05-20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기각
72	2021가합562648	2022-05-20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73	2019가합39720	2020-11-25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74	2020나2047923	2022-01-21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인용
75	2022다215876	2022-05-26	대법원	3심	정정/손배	인용
76	2021가합794	2022-05-27	서울서부지법	1심	반론	기각
77	2019가합37885	2021-08-13	서울서부지법	1심	손배/기사삭제/기타	기각
78	2021나2032119	2022-06-08	서울고법	2심	손배/기사삭제/기타	기각
79	2022다251650	2024-10-08	대법원	3심	손배/기사삭제/기타	기각
80	2020가합66922	2022-06-09	인천지법	1심	손배/기사삭제	기각
81	2018가단258363	2021-04-21	인천지법	1심	손배	기각
82	2021나59253	2022-06-15	인천지법	2심	손배	기각
83	2022다254345	2022-10-16	대법원	3심	손배	기각
84	2021가합3186	2021-08-11	광주지법 해남지원	1심	정정/손배	인용
85	2021나23833	2022-06-22	광주고법	2심	정정/손배	인용
86	2021가단248960	2022-07-01	인천지법	1심	손배	기각
87	2020가합108527	2021-12-01	대전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88	2022나10048	2022-07-06	대전고법	2심	정정/손배	인용
89	2019가단79035	2021-04-09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1심	손배	기각
90	2021나207237	2022-07-07	의정부지법	2심	정정/손배	기각
91	2022다259180	2022-11-10	대법원	3심	정정/손배	기각
92	2021가합40211	2022-07-08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93	2022가합32897	2022-07-08	서울서부지법	1심	손배	인용
94	2021가단56932	2022-07-08	제주지법	1심	손배	기각
95	2020가합37348	2021-10-29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96	2021나2046255	2022-07-08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기각
97	2021가합42460	2022-07-08	서울서부지법	1심	손배	기각
98	2022나2029165	2023-06-23	서울고법	2심	손배	기각
99	2023다254861	2023-11-03	대법원	3심	손배	기각
100	2020가합111957	2022-07-14	서울남부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101	2022나2032352	2022-12-16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인용
102	2019가합569431	2022-07-15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기각
103	2019가합569516	2021-04-14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기각
104	2021나2016063	2022-07-15	서울고법	2심	손배	기각
105	2022다265369	2022-11-18	대법원	3심	손배	기각
106	2020가합536000	2021-04-23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107	2021나2016346	2022-07-15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인용

번호	판결번호	선고일자	법원명	심급	청구명	결과
108	2022다263639	2022-10-14	대법원	3심	정정/손배	인용
109	2020가합113717	2021-10-28	서울남부지법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인용
110	2021나2043980, 2021나2043997(병합)	2022-07-15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인용
111	2022다260906	2022-11-18	대법원	3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인용
112	2020가소1827676	2021-02-23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기각
113	2021나13768	2022-07-20	서울중앙지법	2심	손배	기각
114	2018가합572188	2022-07-20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인용
115	2022나2033065	2023-04-28	서울고법	2심	손배	인용
116	2022가단204343	2022-07-20	서울서부지법	1심	손배	기각
117	2022나46029	2023-02-03	서울서부지법	2심	손배	기각
118	2023다216982	2023-05-03	대법원	3심	손배	기각
119	2021가합233	2022-07-21	인천지법	1심	정정	기각
120	2021가합551464	2022-07-22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121	2022나2031953	2023-03-31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기각
122	2019가합106072	2022-01-20	서울남부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123	2022나2007370	2022-07-22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인용
124	2022다265956	2022-12-20	대법원	3심	정정/손배	인용
125	2020가합1499	2022-08-04	인천지법	1심	정정/반론/손배	기각
126	2020가합42746	2022-08-12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127	2021가합35424	2022-08-12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128	2021가합725	2022-08-12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129	2020가합105051	2022-08-18	서울남부지법	1심	정정	기각
130	2021가합33831	2021-12-17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	기각
131	2022나2002788	2022-08-19	서울고법	2심	정정	기각
132	2021가단5121472	2022-08-19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인용
133	2022나53183	2023-05-30	서울중앙지법	2심	손배	인용
134	2021가단5129414	2022-08-19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인용
135	2021가합503717	2022-08-24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기각
136	2021가단220257	2021-10-08	서울남부지법	1심	손배	인용
137	2021나69682	2022-08-25	서울남부지법	2심	손배	인용
138	2021가합547	2022-08-25	인천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139	2022가합31627	2022-08-26	서울서부지법	1심	손배/기사삭제	기각
140	2020가합32886/ 2020가합32893(병합)	2022-08-26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141	2022나2037838/ 2022나2037845(병합)	2023-06-02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기각
142	2023다254786	2023-10-12	대법원	3심	정정/손배	기각

번호	판결번호	선고일자	법원명	심급	청구명	결과
143	2021가합107993	2022-09-01	서울남부지법	1심	반론	기각
144	2021가합428	2022-09-02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반론	인용
145	2021가합35660	2022-09-02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반론	인용
146	2022가합241	2022-09-02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반론/손배	기각
147	2019가합526984(본소)/ 2022가합516628(반소)	2022-09-02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148	2021가단5122666	2022-09-07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인용
149	2022나56281	2023-09-06	서울고법	2심	손배	인용
150	2021가합10437	2022-09-15	대구지법 포항지원	1심	정정/반론	인용
151	2021가합653	2022-09-15	인천지법	1심	정정/반론/손배	기각
152	2021가소423879	2022-09-21	서울북부지법	1심	손배	기각
153	2022나41639	2023-08-16	서울북부지법	2심	손배	기각
154	2020가합100882	2021-07-22	대전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155	2021나14203	2022-09-22	대전고법	2심	정정/손배	기각
156	2020가합108043	2022-09-22	서울남부지법	1심	정정/기사삭제	기각
157	2022나2043574	2023-11-24	서울고법	2심	정정/반론	기각
158	2019가단531160	2022-09-28	광주지법	1심	손배	기각
159	2021가합542842	2022-09-28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기사삭제	인용
160	2020가합579908	2021-12-01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161	2021나2050773	2022-09-30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기각
162	2021가합101	2021-12-02	서울북부지법	1심	반론	기각
163	2022나2001105	2022-09-30	서울고법	2심	반론	기각
164	2021가단5317952	2022-10-07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인용
165	2021가단3143	2022-10-12	수원지법 성남지원	1심	손배	기각
166	2022나93851	2023-06-15	수원지법	2심	손배	기각
167	2023다254106	2023-09-05	대법원	3심	손배	기각
168	2022가합100838	2022-10-13	서울남부지법	1심	기사삭제	인용
169	2021가단5122512	2022-10-14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인용
170	2021가합560918	2022-10-19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171	2021가합26386	2022-10-19	수원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172	2021가합30767	2022-10-25	춘천지법 강릉지원	1심	반론/손배	기각
173	2022나2549	2023-06-23	서울고법(춘천)	2심	반론/손배	인용
174	2020가합580304	2022-04-13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기각
175	2022나2016626	2022-11-03	서울고법	2심	손배	기각
176	2021가단132414	2022-11-04	서울북부지법	1심	손배	기각
177	2022나43062	2023-10-13	서울북부지법	2심	손배	기각
178	2021가합53118	2022-11-10	창원지법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기각
179	2020가소1461984	2020-11-11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인용

번호	판결번호	선고일자	법원명	심급	청구명	결과
180	2020나83814	2022-11-11	서울중앙지법	2심	손배	기각
181	2022다299034	2023-03-30	대법원	3심	손배	기각
182	2020가합5452	2021-11-10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반론	기각
183	2021나2049476	2022-11-11	서울고법	2심	정정/반론	인용
184	2020가합7213	2022-05-19	춘천지법 원주지원	1심	정정/반론/손배	기각
185	(춘천) 2022나949	2022-11-11	서울고법(춘천)	2심	정정/반론/손배	기각
186	2019가합563358	2022-11-16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기각
187	2023나2002327	2023-08-17	서울고법	2심	손배	기각
188	2023다284329	2024-01-19	대법원	3심	손배	기각
189	2021가합559529	2022-11-16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반론/손배	기각
190	2022나2051070	2023-11-03	서울고법	2심	정정/반론/손배	기각
191	2021가합51954	2022-11-17	광주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192	2021가합581243	2022-11-23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인용
193	2021가단208584	2022-11-25	서울서부지법	1심	손배	기각
194	2022가합521378	2022-11-30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기사삭제	인용
195	2020가소2463860	2021-06-02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기각
196	2021나40067	2022-11-30	서울중앙지법	2심	손배	기각
197	2018가합41856	2020-11-11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198	2020나2047381	2022-02-11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인용
199	2022다222898	2022-08-31	대법원	3심	정정/손배	파기
200	2022나2033782	2022-12-08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정정/손배	기각
201	2021가소104017	2021-11-19	대전지법	1심	손배	기각
202	2021나126885	2022-12-14	대전지법	2심	손배	기각
203	2023다205258	2023-04-27	대법원	3심	손배	기각
204	2021가합592892	2022-12-23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	기각
205	2023나2003719	2023-06-16	서울고법	2심	정정	기각
206	2021가합10860	2023-01-12	광주지법 순천지원	1심	정정/손배	인용
207	2023나20555	2023-07-26	광주고법	2심	정정/손배	인용
208	2022가소346838	2022-08-25	서울서부지법	1심	손배	인용
209	2022나47459	2023-01-12	서울서부지법	2심	손배	인용
210	2021가합24137	2023-01-12	수원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211	2022가합267	2023-01-12	수원지법 평택지원	1심	정정/손배	기각
212	2020가합553043	2022-01-12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기각
213	2022나2007615	2023-01-13	서울고법	2심	손배	인용
214	2023다219059	2023-06-15	대법원	3심	손배	인용
215	2020가합578868	2022-05-13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인용
216	2022나2019137	2023-01-13	서울고법	2심	손배	기각
217	2023다209755	2023-04-27	대법원	3심	손배	기각

번호	판결번호	선고일자	법원명	심급	청구명	결과
218	2021가합36625	2022-05-13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인용
219	2022나2021574	2023-01-13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인용
220	2023다215897	2023-05-20	대법원	3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인용
221	2022가합32576	2023-01-13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222	2021가단259040	2023-01-18	서울남부지법	1심	손배	기각
223	2022가합509712	2023-01-18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기각
224	2021가합59392	2023-01-19	광주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225	2016가합543094	2020-09-23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226	2020나2037971	2023-01-27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인용
227	2021가합517907	2022-04-27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기사삭제	기각
228	2022나2016633	2023-01-27	서울고법	2심	손배/기사삭제	기각
229	2023다215903	2023-05-22	대법원	3심	손배/기사삭제	기각
230	2022가단5048185	2023-01-27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인용
231	2021가단5122345	2023-02-01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인용
232	2023나10121	2023-08-17	서울중앙지법	2심	손배	인용
233	2022가합532170	2023-02-01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인용
234	2020가합1158	2022-02-11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반론/손배	기각
235	2022나2009765	2022-09-23	서울고법	2심	정정/반론/손배	인용
236	2022다287246/ 2022다287253	2023-02-02	대법원	3심	정정/반론/손배	인용
237	2020가합4817	2021-11-17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	인용
238	2021나2050742	2022-09-23	서울고법	2심	정정	인용
239	2022다287260	2023-02-02	대법원	3심	정정	인용
240	2022가합103736	2023-02-02	부산지법 동부지원	1심	반론	인용
241	2020가단345212	2023-02-02	부산지법	1심	손배	기각
242	2023나44368	2023-09-15	부산지법	2심	손배	인용
243	2023다298137	2024-01-27	대법원	3심	손배	인용
244	2021가합890	2023-02-08	의정부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245	2021가합38737	2022-06-03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246	2022나2023280	2023-02-10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기각
247	2021가합1583	2022-07-14	서울남부지법	1심	반론	기각
248	2022나2028452	2023-02-10	서울고법	2심	반론	기각
249	2023다224433	2023-06-01	대법원	3심	반론	기각
250	2022가단5015109	2023-02-10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인용
251	2023나11087	2023-12-07	서울중앙지법	2심	손배	인용
252	2023다317007	2024-04-25	대법원	3심	손배	인용
253	2020가합118903	2023-02-16	서울남부지법	1심	정정/반론/손배	기각
254	2023나2014122	2024-02-14	서울고법	2심	정정/반론/손배	기각

번호	판결번호	선고일자	법원명	심급	청구명	결과
255	2024다229930	2024-06-17	대법원	3심	정정/반론/손배	기각
256	2021가합42477	2022-06-24	서울서부지법	1심	반론	기각
257	2022나2026654	2023-02-23	서울고법	2심	반론	기각
258	2022가단100239	2023-03-08	대전지법 천안지원	1심	손배	인용
259	2021가합701	2022-08-12	서울서부지법	1심	추후/손배	인용
260	2022나2034945	2023-04-07	서울고법	2심	추후/손배	인용
261	2023다230285	2023-06-29	대법원	3심	추후/손배	인용
262	2021가합598074	2023-04-12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263	2018가합6834	2020-10-21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264	2020나2042720	2022-12-09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인용
265	2023다200376/ 2023다200383(병합)	2023-04-13	대법원	3심	정정/손배	인용
266	2021가합535691	2023-04-14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기사삭제	기각
267	2023나2018728	2024-05-31	서울고법	2심	손배/기사삭제	인용
268	2024다256512	2024-10-10	대법원	3심	손배/기사삭제	인용
269	2022가합37298	2023-04-21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270	2023나2018995	2023-09-22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기각
271	2019가합527536	2020-02-19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272	2020나2012620	2023-04-28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기각
273	2021가합732	2022-09-16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반론	인용
274	2022나2039186	2023-04-28	서울고법	2심	정정/반론	인용
275	2021가합114397	2022-11-10	서울남부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276	2022나2048364	2023-04-28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기각
277	2023다236627	2023-07-28	대법원	3심	정정/손배	기각
278	2021가단261516	2023-04-28	서울서부지법	1심	손배	인용
279	2023나44143	2023-10-27	서울서부지법	2심	손배	인용
280	2021가합2351	2022-08-31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	기각
281	2022나2036118	2023-05-19	서울고법	2심	정정	기각
282	2021가합31705	2022-08-26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반론/손배	기각
283	2022나2038053	2023-05-19	서울고법	2심	정정/반론/손배	기각
284	2022가합31146	2022-07-08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285	2022나2029301	2023-06-02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기각
286	2018가합34636	2022-08-12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반론/손배	인용
287	2022나2036729	2023-06-02	서울고법	2심	정정/반론/손배	인용
288	2021가소44042	2022-08-10	전주지법	1심	손배	인용
289	2022나9487	2023-06-08	전주지법	2심	손배	인용
290	2022가합32293	2023-06-09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반론	인용
291	2021가합2665	2023-06-09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기사삭제	기각

번호	판결번호	선고일자	법원명	심급	청구명	결과
292	2020가합30036	2022-07-20	수원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293	2022나20661	2023-06-09	수원고법	2심	정정/손배	기각
294	2023다257310	2023-09-22	대법원	3심	정정/손배	기각
295	2021가단292498	2023-06-14	서울남부지법	1심	손배	인용
296	2023나60634	2023-11-30	서울남부지법	2심	손배	인용
297	2022가합103196	2023-06-15	서울남부지법	1심	정정/반론/손배/기사삭제	기각
298	2022가합10201	2023-06-21	광주지법 순천지원	1심	정정/반론/손배	기각
299	2020가합575760	2022-08-17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300	2022나2033935	2023-06-22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인용
301	2023다257273	2023-10-16	대법원	3심	정정/손배	인용
302	2020가합42036	2023-06-23	서울서부지법	1심	손배	기각
303	2023가단106191	2023-06-23	의정부지법	1심	손배	기각
304	2021가합179	2023-06-28	수원지법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기각
305	2021가합568370	2023-07-05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기각
306	2021가소2209 2022가소369411	2023-01-10	서울서부지법	1심	손배	기각
307	2023나41427(본소)/ 2023나41434(반소)	2023-07-06	서울서부지법	2심	손배	인용
308	2023다263063	2023-07-25	대법원	3심	손배	인용
309	2019가합40485	2020-08-19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310	2020나2030475	2023-07-07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기각
311	2020가합517788	2022-08-26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312	2022나2036163	2023-07-07	서울고법	2심	손배	인용
313	2023다266482	2023-12-01	대법원	3심	손배	인용
314	2021가합577442	2023-07-07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315	2022가단286018	2023-07-13	서울남부지법	1심	손배	인용
316	2023나62524	2024-06-21	서울남부지법	2심	손배	인용
317	2019가합572703	2021-07-07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반론/손배	기각
318	2021나2027667	2022-10-14	서울고법	2심	정정/반론/손배	인용
319	2022다291320	2023-07-13	대법원	3심	정정/반론/손배	파기
320	2023나2029537	2023-09-08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정정/반론/손배	취하
321	2019가합567565	2020-11-25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기사삭제	기각
322	2020나2048759	2023-07-14	서울고법	2심	손배/기사삭제	기각
323	2023가합31655	2023-07-14	서울서부지법	1심	반론	인용
324	2022가합50532	2022-03-24	인천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325	2022나11850	2023-07-20	서울고법(인천)	2심	손배	기각
326	2019가합101855	2019-09-19	서울남부지법	1심	반론	인용
327	2019나204447	2020-10-23	서울고법	2심	반론	기각

번호	판결번호	선고일자	법원명	심급	청구명	결과
328	2020다286294	2023-07-27	대법원	3심	반론	기각
329	2022가합100349	2023-08-09	창원지법 마산지원	1심	정정/손배	기각
330	2022가합565934	2023-08-11	서울중앙지법	1심	반론	인용
331	2021가합746	2023-02-15	의정부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332	2023나2011925	2023-08-18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인용
333	2022가합33760	2023-01-13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반론/손배/기사삭제	기각
334	2023나2006725	2023-08-18	서울고법	2심	정정/반론/손배/기사삭제	기각
335	2021가합12370	2023-08-22	창원지법 진주지원	1심	정정/손배	기각
336	2022가합51283	2023-08-24	춘천지법 원주지원	1심	손배/기타	기각
337	2021가합5736	2023-08-24	전주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338	2022가합561802	2023-08-30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기사삭제	인용
339	2019가합578350	2021-01-20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반론/손배	인용
340	2021나2008505	2023-09-01	서울고법	2심	정정/반론/손배	인용
341	2022가단268188	2023-09-06	서울남부지법	1심	손배	인용
342	2022가합54138	2023-09-07	인천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343	2020가단345212	2023-02-02	부산지법	1심	손배	기각
344	2023나44368	2023-09-15	부산지법	2심	손배	인용
345	2023다298137	2024-01-27	대법원	3심	손배	인용
346	2021가단61477	2023-10-11	춘천지법 원주지원	1심	손배/기사삭제	기각
347	2023나35316	2024-04-23	춘천지법	2심	손배/기사삭제	기각
348	2022가단264957	2023-10-12	서울남부지법	1심	손배	기각
349	2023나67222	2024-09-13	서울남부지법	2심	손배	기각
350	2023다294194	2024-12-12	대법원	3심	손배	기각
351	2021가합549683	2022-11-30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기사삭제	기각
352	2022나2053717	2023-10-13	서울고법	2심	손배/기사삭제	기각
353	2021가합31354(본소)/ 2022가합34565(반소)	2023-01-27	서울서부지법	1심	손배/기사삭제	인용
354	2023나2010014(본소)/ 2023나2010021(반소)	2023-10-13	서울고법	2심	손배/기사삭제	인용
355	2023다300672	2024-03-15	대법원	3심	손배/기사삭제	인용
356	2023가합33873	2023-10-13	서울서부지법	1심	손배/기사삭제	기각
357	2021가합39495	2023-02-10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358	2023나2012744	2023-10-20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기각
359	2023다304728	2024-03-14	대법원	3심	정정/손배	기각
360	2018가합53541	2023-10-26	인천지법	1심	손배	기각
361	2019가합64067	2023-10-26	인천지법	1심	손배	기각
362	2022가단5146225	2023-10-27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기각
363	2022가합53681	2023-11-02	광주지법	1심	손배	기각

번호	판결번호	선고일자	법원명	심급	청구명	결과
364	2023가단73	2023-11-08	대구지법 의성지원	1심	손배	기각
365	2023가단66	2023-11-08	대구지법 의성지원	1심	손배	기각
366	2022가합48505	2023-11-08	부산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367	2023가단114606	2023-11-09	부산지법 동부지원	1심	손배	기각
368	2023나66450	2024-09-24	부산지법	2심	손배	기각
369	2021가소2395681	2022-11-23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기각
370	2022나73293	2023-11-14	서울중앙지법	2심	손배	인용
371	2022가합107464	2023-11-16	서울남부지법	1심	정정/반론/손배	기각
372	2023가합100132	2023-11-16	서울남부지법	1심	정정	기각
373	2022가단288501	2023-11-21	서울서부지법	1심	손배	인용
374	2023가소108969	2023-11-23	창원지법 김해시법원	1심	손배	기각
375	2021가합11896	2023-11-28	창원지법 진주지원	1심	손배/기사삭제	인용
376	2022가합507174	2023-12-08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377	2023가합45871	2023-12-08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기각
378	2023나2061425	2024-08-23	서울고법	2심	손배	기각
379	2024다290727	2024-11-12	대법원	3심	손배	기각
380	2021가단235449	2023-06-16	서울서부지법	1심	손배	기각
381	2023나46170	2023-12-14	서울서부지법	2심	손배	기각
382	2024다211182	2024-05-17	대법원	3심	손배	기각
383	2022가합562966	2023-12-20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384	2023가합32473	2023-12-22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기각
385	2022가합35803	2023-05-12	서울서부지법	1심	반론	인용
386	2023나2023492	2024-01-12	서울고법	2심	반론	인용
387	2024다215207	2024-05-20	대법원	3심	반론	인용
388	2022가합562263	2024-01-12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반론/손배	인용
389	2024나2007718	2024-11-26	서울고법	2심	정정/반론/손배	인용
390	2022가합550994	2023-05-17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	기각
391	2023나2022529	2024-01-12	서울고법	2심	정정/반론	인용
392	2022가합101204	2023-07-12	부산지법 동부지원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기각
393	2023나54979	2024-01-18	부산고법	2심	정정/손배/기사삭제	기각
394	2022가합103033	2024-01-19	인천지법 부천지원	1심	정정/손배	기각
395	2021가합519194	2023-04-14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396	2023나2018414	2024-01-26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인용
397	2022가합2556/ 2022가합2563(병합)	2024-01-26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인용
398	2022가합552679	2024-01-26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399	2021가합592649	2024-01-31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400	2021가합6521	2022-07-07	춘천지법 원주지원	1심	손배	인용

번호	판결번호	선고일자	법원명	심급	청구명	결과
401	(춘천) 2022나1430	2024-02-02	서울고법	2심	손배	인용
402	2022가합104376	2024-02-07	대전지법	1심	손배/기사삭제	기각
403	2022가합557520	2024-02-07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404	2022가합106980	2024-02-08	서울남부지법	1심	손배	인용
405	2021가단244061	2023-01-11	서울서부지법	1심	손배	기각
406	2023나41311	2024-02-15	서울서부지법	2심	손배	인용
407	2023가단241920	2024-02-16	서울남부지법	1심	손배	기각
408	2024나53756	2024-12-17	서울남부지법	2심	손배	기각
409	2023가단135145	2024-02-22	서울동부지법	1심	손배	인용
410	2022가합536233	2024-03-22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기사삭제	기각
411	2023가합61033	2024-03-22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기사삭제	기각
412	2022가합561208	2024-04-05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413	2024나2018602	2024-11-01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인용
414	2022가합552167	2023-09-27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415	2023나2048743	2024-04-12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기각
416	2022가단5314677	2024-04-19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기각
417	2021가합11764	2023-10-12	광주지법 순천지원	1심	손배/기사삭제	인용
418	2023나26348	2024-04-24	광주고법	2심	손배/기사삭제	인용
419	2022가단227810	2024-05-03	서울서부지법	1심	손배	기각
420	2018가합111343	2020-02-11	서울남부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421	2020나2010686	2021-08-19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인용
422	2021다270654	2024-05-09	대법원	3심	정정/손배	파기
423	2024나2020933	2024-06-11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정정/손배	취하
424	2023가합103186	2024-05-09	서울남부지법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기각
425	2024나2026917	2024-12-20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기사삭제	기각
426	2023가합182	2024-05-14	광주지법 목포지원	1심	정정/반론	기각
427	2023가소105398	2024-05-16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기각
428	2024나30887	2024-09-26	서울중앙지법	2심	손배	기각
429	2024다297568	2024-12-31	대법원	3심	손배	기각
430	2022가단5030351	2024-05-22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기각
431	2024나32791	2024-11-28	서울중앙지법	2심	손배	기각
432	2023가합68683	2024-05-24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반론/손배	기각
433	2022가합11093	2023-08-10	대구지법 포항지원	1심	정정	기각
434	2023나16114	2024-05-28	대구고법	2심	정정/반론	인용
435	2022가합10847	2023-08-10	대구지법 포항지원	1심	정정	기각
436	2023나16190	2024-05-28	대구고법	2심	정정/반론	인용
437	2023가합109641	2024-05-30	서울남부지법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기각
438	2023가합51531	2024-06-12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반론	인용

번호	판결번호	선고일자	법원명	심급	청구명	결과
439	2022가합566470	2024-06-12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반론/손배	인용
440	2023가합477	2024-06-14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	인용
441	2021가합12408	2024-06-20	광주지법 순천지원	1심	정정/손배	인용
442	2022가합553085	2023-11-24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인용
443	2023나2059422	2024-06-21	서울고법	2심	손배	인용
444	2023가합205429	2024-06-27	대구지법	1심	정정/반론/손배	기각
445	2022가단5174404	2024-06-28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기각
446	2023가단231669	2024-07-03	인천지법	1심	손배	기각
447	2021가합590643	2023-07-12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반론/손배/기사삭제	인용
448	2023나2034447	2024-07-05	서울고법	2심	정정/반론/손배/기사삭제	기각
449	2024다266151	2024-11-14	대법원	3심	정정/반론/손배/기사삭제	기각
450	2019가합532002	2020-09-23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반론	인용
451	2020나2036947	2021-09-03	서울고법	2심	정정/반론	인용
452	2021다276966	2024-07-11	대법원	3심	정정/반론	인용
453	2023가소102849	2023-08-22	부산지법 서부지원	1심	손배	인용
454	2023나61912	2024-07-18	부산지법	2심	손배	인용
455	2024다268232	2024-10-31	대법원	3심	손배	인용
456	2023가합71610	2024-07-19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반론/손배	기각
457	2023가합88359	2024-07-19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반론/손배	기각
458	2022가합599	2024-07-25	인천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459	2022가합105109	2023-12-07	서울남부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460	2024나2000458	2024-07-26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기각
461	2021가합546523	2024-08-14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인용
462	2023가소11633	2024-02-28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1심	손배	인용
463	2024나75436	2024-08-16	광주지법	2심	손배	인용
464	2024다287219	2024-12-12	대법원	3심	손배	인용
465	2021가합508255	2024-08-22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기각
466	2024가합50048	2024-08-22	춘천지법 원주지원	1심	정정	기각
467	2022가합565873	2024-01-31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	기각
468	2024나2010974	2024-08-23	서울고법	2심	정정	기각
469	2023가소1788550	2023-11-09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470	2023나72228	2024-08-23	서울중앙지법	2심	정정/손배	기각
471	2024다280966	2024-12-15	대법원	3심	정정/손배	기각
472	2023가소105404	2023-12-13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기각
473	2024나3144	2024-08-29	서울중앙지법	2심	손배	기각
474	2024다291553	2024-12-17	대법원	3심	손배	기각
475	2023가합203263	2024-09-05	대전지법	1심	정정	기각

번호	판결번호	선고일자	법원명	심급	청구명	결과
476	2022가합22764	2024-09-05	서울북부지법	1심	손배	인용
477	2023가합107461	2024-09-12	서울남부지법	1심	손배/기사삭제	기각
478	2023가합36377	2024-09-13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479	2022가단109361	2024-09-26	서울동부지법	1심	손배	기각
480	2023가단70860	2024-09-26	수원지법 평택지원	1심	손배	기각
481	2023가소409527	2023-07-05	인천지법	1심	손배	인용
482	2023나68435	2024-09-26	인천지법	2심	손배	인용
483	2022가단232393	2023-10-13	서울서부지법	1심	손배	인용
484	2023나2055321	2024-09-27	서울고법	2심	손배	인용
485	2019가단17178	2020-12-11	서울북부지법	1심	손배	기각
486	2020나43556	2024-10-10	서울북부지법	2심	손배	기각
487	2024다298950	2024-12-26	대법원	3심	손배	기각
488	2023가합183	2024-05-02	인천지법	1심	정정	기각
489	(인천)2024나13034	2024-10-18	서울고법	2심	정정	기각
490	2024가단209336	2024-10-23	서울남부지법	1심	손배	인용
491	2023가합109617	2024-10-23	서울동부지법	1심	손배/기사삭제	기각
492	2023가소10807	2023-07-20	수원지법 여주지원 양평군법원	1심	손배	기각
493	2023나83585	2024-10-23	수원지법	2심	손배	기각
494	2022가합106907	2024-10-24	대전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495	2023가단62326	2024-11-13	전주지법 군산지원	1심	손배	기각
496	2021가합583515	2024-02-07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기사삭제	기각
497	2024나2010905	2024-11-22	서울고법	2심	손배/기사삭제	기각
498	2024가단5243762	2024-11-27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기각
499	2023가합37103	2024-12-06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500	2023가합88342	2024-12-06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반론/손배	인용
501	2021가단256848	2023-05-17	인천지법	1심	손배	기각
502	2023나64990	2024-12-13	인천지법	2심	손배	기각

제2부

# 언론 관련 판결의 쟁점별 분석

---



## 제2부

# 언론 관련 판결의 쟁점별 분석

---

본 보고서 제2부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선고된 명예훼손 관련 언론소송 민사 판결 중 확정된 288건을 대상으로, 주요 사건을 선정하여 쟁점별로 심층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각 판례별로 법원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과 위법성 조각사유를 해석하고 적용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사실관계, 법적 쟁점, 판결요지와 결과, 그리고 해당 판결의 시사점을 서술하였다.

## 1. 당사자

명예훼손 언론소송 민사 판결에서의 원고는 언론보도로 인해 명예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개인 또는 단체이다. 예를 들어 공직자, 기업인 또는 일반 시민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모든 개인이나 법인이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피고는 명예훼손의 원인이 되는 언론보도나 발언을 실제로 작성, 보도, 발행, 유포한 측이며, 언론사(신문사, 방송사 등)와 해당 기사를 작성·기고한 기자 또는 인터뷰 등에서 문제의 발언을 한 사람이 피고가 된다.

### 가. 원고

(1) 회사법인의 전(前) 대표의 비리 의혹 보도 관련, 회사법인의 당사자적격을 판단한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2가합106980 판결)

원고는 글로벌 보험회사의 한국법인이고, 피고는 인터넷 언론사 및 그 소속 기자이다. 피고들은 2022년 10월경 원고 법인의 전 대표이사의 횡령 의혹과 회사 및 관계기관의 은폐, 수사 지연, 침묵 등과 관련된 다수의 기사를 게재했다. 원고의 항의로 기사는 삭제되었고 정정보도가 게재되었으나, 원고는 이로 인해 금융감독원의 자료 제출 요구 등 추가 업무 부담과 신용·명예훼손, 영업이익 손실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전 대표이사 횡령 의혹 보도에 대해 법인인 원고가 직접 명예훼손의 피해자이자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대표이사의 업무 관련 비위행위를 보도하더라도 그 내용이 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경우 법인의 명예 역시 훼손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의 기사로 인해 원고의 사회적 평판 및 신용이 저하되고, 재산상 손해와 무형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여 총 3천만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명령하였으며,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 판결은 기사에 법인 명칭이 직접 기재되지 않아도 기사의 내용과 문맥, 대표자와의 명확한 연관성 등을 종합할 때 법인을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 나. 피고

### (1) 외부 필자가 작성한 기고문에 허위사실의 적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언론사의 면책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19가합3972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 21. 선고 2020나2047923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15876 판결)

원고는 IMF 사태 당시 재정경제부 고위직을 역임한 인물이고, 피고는 인터넷신문사와 전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이다. 피고인 전 수석비서관은 외부 필자로, 피고 언론사에 8회에 걸쳐 칼럼을 게재하면서, IMF 협상 실패 등에 대한 책임이 원고에게 있고, 원고의 거짓말로 IMF 환란이 촉발되었다는 등의 표현을 했다. 이에 원고는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이유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외부 필자의 기고문에 허위사실이 포함된 경우 언론사가 명예훼손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법원은 언론중재법이 정정보도의 대상을 '보도 또는 매개'로 규정하며, 그 내용의 작성 주체를 구분하지 않는 점, 외부인의 의견이나 사실이 언론매체를 통해 전달될 때 그 설득력과 파급력이 커지는 점, 그리고 언론사가 편집권을 통해 기고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외부 필자 기고문에 허위사실이 포함된 경우에도 언론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심은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모두 인용했으나, 항소심은 고위공직자의 공적 업무에 대한 감시·비판·견제 등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보아, 정정보도청구는 인정하되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하였다. 이 판결은 외부 필자 기고문에 허위사실이 포함된 경우에도 언론사가 명예훼손책임을 부담함을 명확히 하였다.

## 2. 피해자 특정

### 가. 일반론

신문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38032 판결 참조).

언론중재법 제14조에서 정하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라고 함은 그 보도 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 내용에 대한 정정보도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가리킨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 등 인적 사항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 나. 피해자 특정이 인정된 사례

#### (1)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는지에 대한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1가합74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8. 18. 선고 2023나2011925 판결)

원고는 대통령 경호실 경호관으로 재직한 인물이고, 피고는 시사월간지를 발간하는 언론사이다. 피고는 원고가 속한 경호팀의 교체 경위와 대통령 탄핵 이후의 행보, 국정 농단 제보 등과 관련하여 원고의 성명이나 식별정보를 명시하지 않은 채 사실관계를 보도하였다. 원고는 해당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기사삭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성명이나 식별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보도 내용과 정황 등으로 피해자가 특정되는 경우 언론사의 명예훼손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법원은 보도에 성명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아도, 기사 전체의 내용, 취지, 당사자의 지위와 주변 사정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의 직접적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언론보도에서 성명이나 이니셜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기사 내용·표현·경력·사진 등 간접적 정보와 전체 맥락을 통해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으면 명예훼손책임이 인정됨을 확인하였다. 즉, 언론사는 피해자 특정에 대해 더욱 높은 책임과 사실 확인 의무를 부담한다.

(2) 주변 정보를 통해 충분히 특정이 가능하다면, 실명이 명시되지 않아도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다고 본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3. 선고 2020가합53600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7. 15. 선고 2021나2016346 판결,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63639 판결)

원고들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활동한 자원봉사자와 유가족으로 현재 부부이다. 피고는 해당 사건에 관한 기사를 작성·게재한 인터넷 언론사와 그 사내이사 겸 발행인이다. 2018년 5월, 피고 언론사는 유가족 텐트에서 원고들과 다른 유가족 남성이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을 기사로 보도했다. 이에 원고들은 해당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은 피해자의 특정 여부, 기사 내용의 진실성, 그리고 공익적 목적의 보도에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에 있다.

법원은 기사에 원고들의 실명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참사 관련 유가족’ 및 ‘자원봉사자’로 명시하였고 ‘지방에서 올라온 자원봉사자 여성’ 등으로 정보를 한정하거나 ‘제주도에서 살림을 차려 살고 있다’는 등 지역적 정보를 통해 원고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기사에서 목격자로 지목된 인물은 현장에 없었고 인터뷰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진상조사 운영위원의 증언 역시 기사 내용과 달랐다. 피고 측의 취재 주장 역시 기사에서 보도된 내용과 직접 연결되지 않으므로, 법원은 기사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명예와 사회적 평가는 중대하게 훼손되었으며, 기사에 급박성이나 공익성이 없고 피고들이 충분한 취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위법성 조각도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각 원고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은 기사에 실명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주변 정보로 피해자가 특정될 경우 명예훼손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보도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고, 목격 증언이나 취재 과정에서 객관적 근거와 충분한 검증이 부족할 경우 언론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언론이 공적 관심 사안을 다루더라도, 기사에 급박성이나 공익성이 없고 충분한 취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위법성 조각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3) 상호 표기 없이도 기사 내 정보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1가합59064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7. 5. 선고 2023나2034447 판결,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66151 판결)

원고는 서울 강남구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이고, 피고들은 두 일간지 소속 기자이다. 피고들은

각자의 인터넷 매체를 통해 원고 치과의 진료 행태, 환자 피해 주장, 상담 비용 고지 방식, 치료 과정에서의 제품 변경 의혹, 진료비 선납 후 방치 의혹 등을 다룬 기사를 게재하였다. 기사에 치과의 상호는 직접 명시되지 않았으나, 병원 위치, 건물 사진, 환자 시위 장면, 건물명 등의 요소로 인해 독자들은 문제의 치과가 원고의 병원임을 충분히 특정할 수 있었다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기사삭제를 청구하였다.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은 실명 표기 없이도 기사와 주변 정보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기사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보도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언론보도가 진실성 및 상당성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인지 여부이다.

법원은 피고들이 기사에 원고 치과의 이름을 직접 밝히지 않았지만, 기사 제목과 사진에 병원 위치와 환자 피켓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일반 독자가 원고 치과임을 충분히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사 중 생니를 발치한 사례나 환자 불만, 고가 제품 변경 의혹, 별도 상담비 부과 등 내용이 모두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생니 발치 등 일부 기사 내용은 허위로 인정되었으나, 고가 제품 변경이나 별도 상담비 부과와 관련된 내용은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생니 발치 등 허위 기사에는 위법성 조각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나머지 보도는 공익성을 인정받아 위법성이 조각되었다. 생니 발치에 관한 허위 기사 부분에 대해 피고들은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책임을 지게 되었고, 그 외 다른 기사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결은 상호 등 실명 공개가 없어도 기사 내 정보로 피해자가 충분히 특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며, 언론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의료 고발 보도를 할 때에도 내용, 자료, 기사 배열의 신중함·객관성이 요구됨을 강조한다. 명예훼손 분쟁에서는 피해자 특정 가능성과 사실 확인 노력이 중요한 판단요소임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 다.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한 사례]

- (1) 소수로 구성된 조직에 대한 집단표시 기사에서 개별 구성원을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2. 11. 선고 2019가단17178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0나43556 판결,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다298950 판결)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이고, 피고는 인터넷신문사 및 그 소속 기자이다. 피고는 2018년 6월 14일 “집행관들 불법 인도집행 만연…채권자 없이도 ‘관행적’ 집행”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법원에 소속된 집행관들이 법원의 부동산인도집행 과정에서 채권자나 그 대리인 출석 없이 관행적으로 집행하는 등 불법행위가 만연화돼 있다고 보도하였다. 원고는 해당 기사가 자신을 특정하여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은 소수로 구성된 조직에 대한 집단표시 기사에서 개별 구성원을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법원은 해당 지역 집행관사무소 소속 집행관은 총 11명이고, 그 중 부동산인도집행을 담당하는 집행관은 4명에 불과하고, 기사 내용과 업무 기간·지역 등 정황을 종합할 때 원고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어 집단표시 명예훼손 성립을 인정했다. 또, 이 사건 기사에서 민사집행법 위반 및 허위 인도조서 작성 사실을 적시한 점이 명예를 훼손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집행관의 위법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안이고, 기사가 충분한 사실확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악의나 중대한 경솔함이 없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은 부정하였다. 이 판결은 해당 집단의 구성원 수가 소수이고 기사 내용 및 정황을 통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 특정된다는 법리를 확인하였다. 또한 언론이 공익적 목적과 상당한 사실확인여 기반해 보도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불인정한 사례]

- (1) G시의 상수관로 공사에서 미승인 제품이 사용되었다는 보도가 G시 소속 직원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9. 26. 선고 2023가단70860 판결)

인터넷신문을 운영하는 피고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G시가 발주한 상수관로 공사에 미승인 제품이 사용되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원고들은 G시 상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피고가 기사에서 ‘G시 관계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미승인 제품 사용의 원인을 직원들의 관리 소홀로 돌렸다고 주장하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각각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은 집단표시 방식의 기사로 인해 원고 개인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법원은 실제로는 인증 제품만 납품되었고, 피고가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허위사실을 기사에 포함한 점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기사에서 특정 시기나 담당자가 명확히 언급되지 않았고, 관련 부서의 직원 수와 인사이동 등을 고려할 때 개별 원고가 지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기사 내용이 개별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킬 정도로 구체적이지 않아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 판결은 집단표시 방식의 기사라도 구성원 수, 인적 정보 공개 여부, 기사 내용의 구체성, 피해자 특정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명예훼손책임의 성립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 3. 구체적 사실의 적시

#### 가. 일반론

언론보도는 대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구별기준 자체가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해당 언론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언론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해당 언론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일반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56413 판결 참조).

#### 나. 사실적시로 본 사례

##### (1) 외부기고문에 의견표명 외에 명백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경우 언론사의 책임 여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23. 선고 2019가합53200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8. 20. 선고 2020나2036947 판결,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6966 판결)

원고는 방송사, 피고는 일간지를 발간하는 언론사이다. 피고는 기고문과 기사에서 방송사의 정치인 출연, 정치 이슈 다루기, 간부 해임 및 외부 인사 채용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법원은 원고 방송사가 정치인을 출연시키고 정치 이슈를 다루었다는 점은 인정하였으나, 간부 해임과 외부 인사 채용 등 일부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언론사가 내부 인사가 아닌 외부 인사의 의견 표명뿐만 아니라 사실적 주장이 포함된 기고문을 받아, 외부 인사 작성임을 밝혀 그대로 또는 일부 편집하여 보도하였더라도, 해당 기고문에 허위 사실이 명백히 포함되어 있다면 언론사는 편집권과 게재 결정권을 가지므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 국립대 무용학과 교수의 학생 명의도용에 관한 보도 관련, 기사에 사용된 표현이 사실적시 또는 사실의 암시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1가합3662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 13. 선고 2022나2021574 판결, 대법원 2023. 5. 20. 선고 2023다215897 판결)

원고인 국립대 무용학과 교수는 피고 방송사가 학생의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하여 협회 이사장 선거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데 대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그리고 기사삭제를 청구하였다. 이 사건 보도에서 “해당 학생은 고소 사실을 전혀 몰랐다”, “명의도용” 등의 표현이 사용되었다.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은 “명의도용” 등 표현이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진위가 입증 가능한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도 내용 전체에서 교수의 행위가 암시되거나 특정되어 명예훼손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해당 학생은 고소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명의도용” 등 표현은 증거로 입증 가능한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이고, 기사 전체의 취지에서도 교수가 학생 동의 없이 명의를 사용해 소를 제기했다는 사실을 암시하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정정보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었고, 2심과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판결에서도 언론보도에서 비유적, 암시적 또는 추측적 표현이라도 기사 전체의 맥락을 통해 구체적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면 명예훼손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3) 원고가 연예인으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제공받았다는 의혹 보도 관련, 암시적·간접적 표현을 통해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인정될 수 있는지 판단한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18가합3986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4. 21. 선고 2022나2038701 판결,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3다238739 판결)

원고는 피고 방송사 및 프로그램 제작진을 상대로, 자신과 망인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 및 성접대 의혹을 암시하는 내용의 방송보도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적 쟁점은 방송보도에서 직접적 표현이 아닌 암시적·간접적 표현을 통해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방송보도의 각 문구, 통상적 의미, 방송 내용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해당 방송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성접대 등 불법적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의 존재를 암시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1심, 2심, 3심 모두 해당 보도를 허위로 인정하고 피고 방송사에 정정보도 의무를 부과했으며, 원고의 명예가 사적 영역의 허위사실로 인해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직접적 표현이 없더라도 기사·방송 전체의 취지, 암시적·간접적 표현, 맥락을 통해 시청자가 해당 사실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책임이 성립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사적 영역에 대한 보도는 공공의 관심사라 할지라도 언론에게 명확한 사실 확인과 책임이 요구됨을 재확인한 판례이다.

#### (4) '간첩', '여성성 이용' 등 표현이 암시에 의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4. 선고 2021가합53569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5. 31. 선고 2023나2018728 판결, 대법원 2024. 10. 10. 선고 2024다256512 판결)

원고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 한국 지사의 대표인 중국인이고, 피고는 국내 언론사와 유튜브 채널 세 곳이다. 피고들은 원고가 도지사과 친분을 맺고 친중 행보를 유도하며 중국을 위한 간첩 활동을 했다는 의혹, 그리고 대표가 여성성을 이용했다는 내용을 기사와 영상으로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5억 원의 손해배상과 기사삭제를 청구하였다.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은 '간첩', '여성성 이용' 등의 표현이 단순한 의견이나 비유적·수사학적 표현에 불과한지, 아니면 기사 전체의 맥락과 암시로 인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 받아들여져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1심 법원은 '간첩'이라는 용어가 '적국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만 사용되지 않고, 수사학적·비유적 표현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국가·반사회적 세력'과 같은 의미에서부터 '북한에 우호적인 사람' 등에 이르기까지 시대적·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확장·변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므로 의견표명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간첩활동이라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인 여성인 원고가 전 도지사과 친분이 있고, 중국공산당의 지시에 따라 여성성을 이용해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으므로, 기사에서 사용된 '스파이'라는 표현은 원고가 간첩의 사전적 의미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피고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 2심 판결을 확정하였다. 이 판결은 비유적·수사학적 또는 암시적 표현이라도 기사 전체의 취지와 맥락에서 독자가 구체적 사실로 인식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책임이 인정된다는 법리를 실시하였다.

#### 다. 의견표명으로 본 사례

##### (1) 지도교수의 비리를 폭로하는 보도에서 사용된 "진실 은폐", "적폐 과학자" 등 표현을 의견표명 내지는 평가로 판단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8. 선고 2023가합4587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8. 23. 선고 2023나2061425 판결, 대법원 2024. 11. 12. 선고 2024다290727 판결)

인터넷 언론사인 피고는 기사에서 모 대학교 연구실 내 폭언, 인격모독, 인건비 상납 등 다양한 비리를 언급하며, 원고(교수)에 대해 "학생·연구원들이 고통받았다", "진실이 은폐됐다", "적폐 과학자" 등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에 원고는 해당 표현들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기사삭제를 청구하였다.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은 기사 내 표현들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의견표명 또는 추상적 평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해당 표현들이 원고의 연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의견 또는 평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사 전체 또한 과학계 전반을 언급하는 것으로, 원고의 연구실이나 원고의 비리를 직접적으로 지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표현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원고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수인한도 내라고 보았다. 이 판결은 기사에 사용된 추상적·간접적·의견적 표현만으로 명예훼손책임이 성립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사실 적시 여부 판단은 기사 전체의 맥락과 표현의 객관적 의미, 대상의 사회적 지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사회적 관심 사안에 대한 비판적 의견과 표현이 일정 범위 내에서는 허용된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2) 청소년 활동을 빙자한 위장 포교라는 전문가 의견의 인용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간접적 우려를 표명한 의견에 해당한다는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1가합158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2. 10. 선고 2022나2028452 판결,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24433 판결)

원고(비영리 민간단체)는 피고(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사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해당 기사에서는 원고 구성원들이 특정 종교 신도임을 근거로 청소년 대상 봉사활동이 위장 포교일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인용되었다. 본 사건의 법적 쟁점은 기사 내용이 언론중재법상 반론보도가 가능한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지와, 반론보도청구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해당 기사가 ‘청소년 활동을 빙자한 위장 포교’라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인터뷰를 인용해 간접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의견이나 비평에 불과하다고 보아, 이는 사실적 주장이 아니므로 반론보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기사 말미에 이미 원고의 반박 입장이 반영되어 있음을 들어, 원고가 추가적으로 반론보도를 통해 얻을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반론보도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판결은 언론보도에서 전문가 의견이나 제3자 인터뷰 인용을 통한 간접적인 표현이나 우려 표명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이나 비평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3) 노조의 비판 성명을 인용한 보도는 당시 분위기를 평가한 의견표명에 해당한다는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31. 선고 2022가합56587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8. 23. 선고 2024나2010974 판결)

원고는 방송사이고, 피고는 인터넷 신문사이다. 2022년 9월,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관련 영상이 방송사 유튜브 채널에 자막과 함께 송출되었고, 대통령실은 미국 의회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피고 언론사는 원고의 노조 비판 성명을 인용해 “엠바고가 언제 풀리냐”며 시كل벽적했다”고 보도했고, 원고는 실제로는 차분히 회의 준비를 했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은 해당 보도가 ‘사실적 주장’인지 ‘의견표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이다.

법원은 노조의 비판 성명을 인용한 “시끌벅적했다”, “신이 난 듯 떠드는 소리” 등의 표현이 객관적 사실로 증명할 수 없는 주관적 평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사 전체가 뉴스룸의 태도와 분위기에 대한 의견표명에 해당하므로, 사실적 주장으로 볼 수 없어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언론보도에서 의견표명과 객관적 사실의 구별을 엄격히 하고,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한정되어야 하며, 기사 전체의 맥락과 표현 방식, 사회적 배경, 독자의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하였다.

#### (4) 통화내역에서 비롯된 추정을 전제로 의혹제기를 한 경우 의견표명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7. 선고 2019가합57270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나2027667 판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9132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9. 8. 선고 2023나2029537 판결)

인터넷 언론사의 운영자와 소속 기자인 피고들은 과거 청와대 행정관이자 검사로 활동했던 원고의 금융범죄 혐의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원고는 이 기사를 통해 허위 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정정보도를 청구하였으며, 기사에 자신의 실명, 사진, 음성이 포함되어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2심에서는 법원이 정정보도청구를 인용하였고, 3심에서 다시 원고 청구에 대한 기각 취지로 파기환송되어 환송후심에서 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2심에서는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와 비서관 등의 유착 의혹을 보도한 기사에 대해, “원고가 청와대 행정관 근무 시 수사 관련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제1사실)과 “원고가 수사에 개입하거나 무마하려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실(제2사실)이 기사에서 암시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2심에서는 제1사실과 제2사실을 구분하여, 제1사실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제2사실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정보도를 명하였다.

하지만 3심에서는 해당 기사 도입부에서 기사 내용이 피고가 확보한 통화 내역을 근거로 추정한 것임이 명시되어 있고, 원심이 암시되었다고 본 제2사실은 객관적 사실이 아닌 주관적 평가 또는 비판적 의견표명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기사에서 제2사실이 암시된다고 하더라도, 제1사실을 적시해 제2사실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보도에 대해 원심이 단순히 의혹 내용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정보도청구를 인용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의혹이나 혐의에 대한 표현이 단순한 주관적 평가나 비판적 의견에 해당한다면, 객관적인 ‘사실적 주장’과는 구별되어야 하고, 언론보도에서 의혹 제기만으로는 곧바로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기사 전체의 맥락과 표현 방식, 그리고 실제로 입증 가능한 근거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5) 보도 내용이 투서나 소문에 근거한 단순 의혹 제기예 그치는 경우, 허위사실을 암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5. 9. 선고 2023가합10318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2. 20. 선고 2024나2026917 판결)

원고(보험회사)는 피고(인터넷 신문사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기사삭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해당 기사는 원고의 대표가 특정 기관의 직원을 상대로 골프 접대 및 향응을 제공했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기사에서 골프 접대 및 향응 제공, 유착 의혹 등 표현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법원은 해당 기사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기사 내용이 투서와 소문에 기반한 의혹 제기 수준에 머물러, 허위 사실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기사가 공익적 사안을 다루고 있으며,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사삭제 및 정정보도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언론보도에서 소문이나 제3자 주장, 추측, 인용이 객관적·구체적 사실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기사 전체의 맥락과 표현 방식, 일반 독자의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으며, 단순 의혹 제기나 의견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정정보도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 4. 사회적 평가 저하

### 가. 일반론

신문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79262 판결 참조). 따라서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등 참조).

## 나. 사회적 평가 저하 인정 사례

### (1) 원고가 당한 가해행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보도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본 사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10. 25. 선고 2021가합30767 판결,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 6. 23. 선고 2022나2549 판결)

원고는 1980년 강원도 정선군에서 발생한 ‘사북 사건’ 피해자이고, 피고 회사는 2015년 F 회사를 흡수합병한 지역 방송사업자이다. F 회사는 2006년 ‘사북 사건’ 관련 프로그램에서 피해자 동의 없이 방송하였다. 이에 원고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원고와 F 회사는 사과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고 해당 방송을 원고의 입장 반영 없이 자사나 타 방송사에서 방영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했고 그 의무를 피고가 승계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0년 ‘사북 사건’을 다큐드라마로 제작·방송하면서 원고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방송으로 인한 피해와 조정합의 위반을 주장하며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1심 법원은 이 사건 다큐드라마가 역사적 사실을 기본 토대로 하지만 작가의 창작이 개입된 허구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특정한 역사적 사실관계만이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고, 작가의 상상력으로 구성된 부분은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론보도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법원은 이 사건 다큐드라마에서 원고의 피해 사실을 비중 있게 소개하고 있고, 이 사건 다큐드라마 중 피고가 원고의 피해를 고의로 축소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려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인상을 주고 있다고 불만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2심 법원은 일부 방송 내용이 역사적 사실로 인식될 수 있어 반론보도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반론보도를 라디오와 인터넷을 통해 게재하고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광부들의 쟁의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원고에 대한 가해행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도 판시하였다. 덧붙여, 피해가 크지 않음에도 이를 과장하여 민주화운동을 매도한다는 부정적 인상과 오해를 심어주었으므로, 이 사건 다큐드라마의 제작 및 방송은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며, 이러한 허위보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을 인정하였다. 이 판결은 상고 없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은 허구적 형식이 포함된 방송이라도 청취자가 역사적 사실로 인식할 수 있다면 언론사가 법적 책임을 진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과거사와 같은 민감한 사안을 다룰 때 언론은 사실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피해자 보호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함을 보여준다.

## 다. 사회적 평가 저하 불인정 사례

### (1) 정부정책 지지 발언 자체가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8. 선고 2022가단5174404 판결)

원고는 호흡기내과 교수이며, 피고들은 대한민국 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2명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주간 정책정보지 제작사 소속 기자이다. 소속 기자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과 협력하여 코로나19 백신의 효과와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원고와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해당 인터뷰 내용은 정책주간지에 기사로 게재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활용한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이후 2022년 12월 원고가 언론을 통해 “백신 부작용으로 2차 접종을 하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과 검찰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재정신청도 기각되었다. 이후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의 발언을 왜곡해 정부의 백신 정책에 무조건 동조하는 인물로 보이게 했으며, 명예훼손과 함께 초상권·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의 보도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단순한 정부 정책 옹호나 백신 접종 장려 발언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가 이미 여러 언론에서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보도가 그의 발언을 새롭게 왜곡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사와 카드뉴스는 원고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단순히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취지로 소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 정부 정책 지지 발언 자체가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당시 논란도 보도 시점에서 예측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어서 피고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구체적 사실이 필요하며, 간접적·우회적 표현이라도 전체 취지상 사회적 가치를 침해할 수 있다면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단순한 의견표명이나 정책적 옹호 발언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나아가 보도의 명예훼손 여부는 전체 맥락, 표현 방식, 독자의 인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의 법리를 따랐다. 결국, 이 사건은 공적 사안에 관한 발언이나 정부 정책 지지 발언이 곧바로 명예훼손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단순한 의견표명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례라 할 수 있다.

(2) 다른 언론사의 오보를 무비판적으로 인용하고 원고의 반박 자료를 무시한 보도는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2가합55308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6. 21. 선고 2023나2059422 판결)

원고는 시나리오 작가이고, 피고들은 언론사 소속 기자들이다. 피고들이 작성한 6건의 기사에는 원고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겨 수사와 기소 대상이 되었고, 타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해당 기사들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명예가 훼손되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은 기사에서 보도된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과 폭행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부합하는지, 기자들이 충분한 자료 확인과 취재 등 '상당성' 요건을 갖췄는지, 그리고 기사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실질적으로 저해할 만큼 허위사실을 적시했는지에 있다.

법원은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보도는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보도된 장소는 방역지침 적용 대상이 아니고 원고 또한 기소되지 않았다. 원고가 신용카드 내역과 통화 기록 등 구체적인 반박 자료를 제출한 반면, 기자들은 익명 제보만으로 취재했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않았다. 다만, 폭행 사실과 상해 정도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실제로 6주 치료 진단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10주 치료 필요'는 표현은 과장에 불과하며 사회적 평가 저하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기자들이 진실성·상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위법성 조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다른 언론사의 오보를 무비판적으로 인용하고, 원고의 반박 자료를 무시하는 취재 태도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언론이 타인의 명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도를 할 때, 단순한 제보나 기존 기사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객관적인 자료와 철저한 취재가 필수적으로 요구됨을 강조한다. 허위사실로 인해 명예가 훼손된 피해자는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언론이 진실성과 상당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 5.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

### 가. 일반론

표현의 자유는 민주정치에 있어 최대한의 보장을 받아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등).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위법성 판단의 기본 원칙으로 표현행위자가 얻는 이익과 피해자가 받는 피해를 비교·형량한다. 이익형량에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하기만 하면 충분하며, 현저한 우월성은 필요하지 않다. 언론 보도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라는 공익과 피해자의 권리를 함께 고려하며, 보도의 목적, 공익성, 진실성, 신속성, 근거의 신빙성,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형량 기준은 표현행위의 주체(개인 또는 언론), 피해자의 유형(공인 또는 사인), 표현 내용(사실 적시 또는 의견 표현)에 따라 달라진다. 언론 보도는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며 광범위한 보도가 허용되지만, 엄격한 주의 의무가 부과된다. 또한, 공익 사안에 관한 의혹 제기나 비판에 있어서는 일정 수준의 과장도 보호된다.<sup>12)</sup>

이하에서는 공적 사안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 공적 인물 관련 판례 및 위법성 조각 사유인 공익성, 진실성, 상당성 관련 사례를 살펴본다.

### 나. 공적 사안에 대한 위법성 판단 심사 기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의 수행을 그 사명의 하나로 하는 언론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언론보도의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직자의 공직 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의혹을 품을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사항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론보도를

12) 박용상, 『신명예훼손법』, 박영사, 2025, 154-156면.

통하여 위와 같은 의혹사항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등의 감시와 비판 행위는 언론자유와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인 보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언론보도로 말미암아 공직자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여 바로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고,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이때 언론보도가 공직자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지는 그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 방식, 의혹 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정도, 취재 과정이나 취재에서 보도에 이르기까지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1다40373 판결 등 참조).

(1) 과거 경제부처의 고위공직자였던 사람에게 외환위기를 초래한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칼럼 내용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19가합3972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 21. 선고 2020나2047923 판결, 대법원 2022. 5. 27. 선고 2022다215876 판결)

원고는 과거 재정경제원 차관을 지낸 인물이고, 피고들은 인터넷 신문사와 전직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이다. 피고 중 전직 수석비서관은 2019년 7월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에 글을 게재하였으며, 이전에도 다른 인터넷신문에 칼럼을 작성·게재한 바 있다. 해당 기사와 칼럼에서 피고들은 원고가 IMF 외환위기를 초래한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해당 보도가 허위라며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인터넷 신문사에는 정정보도를, 피고 전직 수석비서관에게는 손해배상의 일환으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은 기사와 칼럼의 ‘허위성’ 및 그로 인한 명예훼손·불법행위 성립 여부와, 보도가 공익적 목적 또는 사회적 감시의 기능을 수행한 결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이다.

법원은 이 사건 기사와 칼럼이 외환위기 원인 규명을 위한 공익적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했으나, 객관적 근거나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원고에게 외환위기 책임을 단정적으로 돌린 행위는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며, 명예훼손 및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피고 중 칼럼을 작성한 전직 비서관은 직접적인 관련 업무 경험도 없었고 반론 청구 등 필수적인 사실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점, 근거를 회고록에만 의존하고 핵심 자료를 배제한 점, 복합적 외환위기 원인과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취지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이 지적되었다. 이 판결은 공공적 관심사나 사회적 논의 가치가 큰 사안에 대한 언론보도라 하더라도 충분한 사실 확인과 객관적 근거 없이 단정적·일방적 보도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킨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다. 이는 언론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공적 감시 기능과 개인의 명예 보호 사이에서 균형에 관한 핵심적 기준을 제시한다.

(2) 전직 대학교 총장의 고등학생 아들이 제1저자로 논문을 등재한 데 대해 연구부정행위 등 의혹을 제기한 보도가 공익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판단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7. 12. 선고 2022가합101204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4. 1. 18. 선고 2023나54979 판결)

원고들은 대학교 전 총장, 그 총장의 아내 및 아들이며, 피고는 인터넷 신문사이다. 2014년 총장의 아들이 원고는 고등학생 신분으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되었고, 해당 논문의 공동 저자는 그의 부모와 관련 교수들이었다. 원고 전 대학교 총장이 2021년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이후, 피고는 그해 9월 원고 아들이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에 관한 기사를 인터넷신문에 게재하였다. 이 기사에는 원고 부자가 논문 등재와 관련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원고들은 해당 기사가 허위라며 손해배상과 기사삭제,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법원은 해당 기사가 공공의 관심사에 대한 보도로서,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을 비교할 때 명예훼손이 중대하거나 현저하게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사 내용 대부분은 진실이거나 의견에 해당하여 허위로 볼 수 없으며, 정정보도가 필요한 부분도 기사의 본질적 핵심과 관련이 없어 원고에게 정정·반론보도의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법원은 기사가 사실을 적시했거나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없으며, 피고가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당시에는 고등학생 자녀의 입시를 위해 대학교수가 자녀를 논문 저자로 허위 등재하는 등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았고, 교육부에서도 재검증이 이루어졌다. 이 판결에는 원고의 자녀가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 의혹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원고의 도덕성과 자질, 유권자의 알 권리와도 관련된 공적인 관심 사안임이 판시되었다.

#### 다. 공적 인물

공적 인물은 유명 인물이나 보도 시점에 공공에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람을 말한다.<sup>13)</sup>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문제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사이의 경계 설정이라는 중요한 법적 쟁점을 안고 있다. 1964년 *New York Times v. Sullivan* 판결을 통해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책임은 실질적 악의(actual malice)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기준이 등장했으며 이후 판례에서 ‘전면적 공적 인물’, ‘제한적 공적 인물’ 등의 개념과 사적인 인물에 대한 기준이 세분화되었다.<sup>14)</sup> 우리나라는

13) 박용상, 『신명예훼손법』, 박영사, 2025, 173면.

14) *Gertz v. Robert Welch, Inc.*는 명예훼손 소송에서 ‘공적 인물(public figure)’ 개념을 명확히 한 판례로 유명하다. 이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원고가 공적 인물인지 사적 인물인지에 따라 입증책임과 구제 요건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전면적 공적 인물(all-purpose or general-purpose public figure)은 대중적으로 익숙하고, 지속적으로 전국적·지역적으로 명성이 높은 인물로서, 예를 들어 유명 운동선수, 유명 변호사, 정치지도자 등을 들 수 있다. 반면에 제한적 공적 인물은 특정 논쟁이나 이슈(예: 고발사건, 사회적 논란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발언한 경우를 말한다. 실질적이고 구체적 기준은 명확하지 않아 법원이나 배심원 재량이 크다는 한계가 있다. Alex B. Long, “The Lawyer as Public Figure for First Amendment Purposes” *Boston College Law Review*, 2016, pp. 6-9.

판례를 통해 독자적 기준을 발전시켜 왔으나 ‘공적 인물’의 범위, 진실성 입증 기준 등 핵심 쟁점은 명확하지 않고, 법원의 개별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피해자가 공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사실의 진실성, 공익성, 보도자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등 개별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공적 인물’, ‘공공의 관심사’에 속하는 사안이라면, 명예훼손 위법성 판단 기준을 완화하되,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는 책임을 인정한다. 판례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사회적 영향력이 큰 유명인, 유명 연예인, 유명 언론인, 유명 사회 운동가 및 시민단체 대표, 프로 운동선수, 대기업 회장 등 다양한 예를 들고 있으며, 공적 인물로 분류될 경우, 명예 보호가 완화되는 대신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sup>15)</sup>

### [공적 인물 긍정 사례]

- (1) 원고의 이력을 토대로, 원고를 ‘고위공직자’라고 표현한 보도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 8. 24. 선고 2022가합51283 판결)

원고는 강원도 도지사 비상근 무보수 보좌관으로 재직하다 사임한 인물이고, 피고는 기자이다. 피고는 원고의 확인 없이 기사에서 원고를 ‘고위공직자’로 표현하고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의 신생 영화제작사 제작비 지원에 개입한 것처럼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해당 기사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부정적 인식과 인격권 침해를 입었고, 결국 보좌관직을 사임하게 되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과 후속 취재 금지를 청구하였다.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은 원고를 ‘고위공직자’로 표현하거나 영화제작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비상근 무보수 보좌관이 고위공직자인지, 그리고 해당 보도가 명예훼손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법원은 원고를 ‘고위공직자’로 표현하거나 영화제작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도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정책비서관 경력이 있고, 문화·관광·체육 등 정책 자문과 회의 참석 등 공적 역할을 수행했으므로, 비상근 무보수 보좌관이라도 ‘고위공직자’로 평가받기에 충분하다고 보았다. 해당 기사는 원고의 사적 영역이 아닌 공공정책과 관련된 사안을 다루고 있어 사회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에 해당하며, 이러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보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책임이 제한된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판결은 비상근·무보수 직위라도 공공정책 결정에 관여한다면 고위공직자로 인정될 수 있고, 언론의 사회적 감시·비판 자유가 폭넓게 보장됨을 시사한다.

15) 김진, “공적인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고찰 - 새로운 모색을 위한 제언 -”, 『형사법의 신동향』 제36호, 2012. 9. 283-304면 ; 김경호, “언론 상대 고위공직자 명예훼손 소송 연구 - 대법원의 위법성조각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언론과 법』 제22권 제2호, 대검찰청, 2023. 8. 32-41면.

## (2) 유명 유튜브 인플루언서가 공적 인물의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1가단208584 판결)

원고는 유명 유튜브 채널과 화장품 브랜드를 운영하는 인플루언서이고, 피고는 인터넷 신문사의 기자이다. 피고는 2020년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연속적으로 원고에 관한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에서는 원고가 협찬받은 다이어트 제품을 자사 제품이 아닌 것처럼 숨기고 홍보했다는 의혹, 과장·허위광고 여부, 제품 공동구매 과정에서의 부당행위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루어졌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보도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연한 모욕에 해당한다며 5천만 원의 위자료료를 청구하였다. 주요 법적 쟁점은 원고가 공적인 인물로서 공적 관심사에 관한 비판을 받은 경우 언론의 자유가 어느 정도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허위 여부와 관계없이 기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등에 관한 것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SNS는 물론 유튜브 상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유명인이라는 점과, 제품 광고 및 판매 과정에서 허위 또는 과장광고의 가능성이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정했다. 기사에 일부 과장된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 활동으로 판단하고, 허위 사실 적시나 모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피고가 보도의 진실성을 믿을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을 공적 인물이라고 단정하지 않았지만, 원고의 허위과장광고 및 공동구매 과정의 논란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기사 내 과장이나 부정적 표현이 있더라도 전체 맥락과 사회적 목적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며, 기사 제목과 본문을 분리하지 않고 기사 전체의 취지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인플루언서의 광고 행위와 공동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 역시 사회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임을 밝혔다.

## (3) 전직 국회의원이 지인의 채용을 위해 부정청탁하였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 원고의 공적 지위 및 취재 내용을 고려해 위법성 조각사유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4. 9. 선고 2019가단79035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나207237 판결,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59180 판결)

전직 4선 국회의원인 원고는 피고들(방송사, 사장, 보도본부장, 사회부장, 기자)이 원고의 지인 채용과 관련하여 원고가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와 공익적 목적으로 인한 위법성 조각 여부이다.

법원은 이 사건 보도의 부정청탁에 관한 사실 적시에 대해, 당시 그러한 의혹이 실제로 존재한 상황에서 보도의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허위사실 적시로 볼 수 없고, 원고는 공적 인물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피고 방송사가 이 보도를 한 목적 역시 원고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에 기반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충분한 조사에 바탕을 둔 보도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다. 이 판결은 언론이 공적 인물의 의혹을 합리적 근거와 충분한 사실 확인에 기반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보도한 경우 명예훼손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언론의 자유와 사회적 감시 기능을 존중한 결정으로 볼 수 있다.

## 라. 공익성 판단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명예훼손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등 참조).

### [공익성 인정 사례]

#### (1) 공공기관의 공식 발표를 인용한 언론보도의 명예훼손책임에 대한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4가단5243762 판결)

원고는 2015년부터 인천 강화군에서 정신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정신과 전문의다. 2024년 3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원고 병원의 위반 사실과 권고사항을 담은 보도자료와 결정문을 언론사에 배포하였고, 피고 언론사들은 이를 바탕으로 원고 병원에 관한 기사를 작성·보도했다. 해당 기사에는 환자 통신 제한, 여성개방병동 출입문 폐쇄, 의사능력이 부족한 환자의 자의입원, 열악한 위생 및 시설 등 내용이 포함되었다. 원고는 이러한 보도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 및 병원 신용 손실을 초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은, 피고 언론사 보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인지,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 자료에 근거한 보도의 경우 원고에 해명 기회 제공이 필요한지에 있다.

법원은 피고 기사에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나, 해당 기사는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와 결정문을 인용해 공공의 관심사인 정신요양병원 운영 실태를 다룬 것이라 판시하였다. 또한 인권위 결정문을 근거로 작성된 기사에 원고에게 해명이나 반론 기회를 추가로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언론 윤리 위반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 자료에 근거한 언론보도의 경우, 보도 내용에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공익성이 우선적으로 인정된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정신요양병원의 운영 실태와 환자 인권 보호 문제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므로, 언론이 인권위 결정문을 인용·보도한 행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는 정당한 활동이라고 판시하였다.

### (2) 문화행사 입찰 부정 의혹 관련 보도의 공익성을 판단하여 언론사의 명예훼손책임을 부정한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5. 3. 선고 2022가단227810 판결)

모 행사 대행업체는 2017년 문화재단이 주최한 문화축제의 총괄대행사로 선정되었고, 원고는 해당 업체의 국장으로서 행사를 주관하였다. 이후 경찰이 주관사 선정 과정에서 입찰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대행업체와 문화재단을 압수수색하자, 기자들이 이 사실을 보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대행업체의 사업기획부장이 입찰방해죄로 처벌을 받았고, 원고 역시 정직 징계를 받았다. 원고는 본인이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기자들을 형사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수사기관은 불기소 또는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은 보도에서 원고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허위 사실이 적시되었는지, 기사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보도의 공익성 등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법원은 기자들이 '원고가 입찰부정과 뇌물제공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적으로 서술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경찰의 내사와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 사업기획부장의 형사처벌 등 수사 경위가 기사 내용과 부합한다고 보았다. 또한 당시 다른 언론사들도 유사하게 보도했으며, 노조 관계자 제보와 사내 감사 내용, 현장 수사 동향 등 다양한 근거를 토대로 작성된 점이 인정됐다. 이어 법원은 해당 기자들이 문화축제 입찰 과정의 부정 의혹이라는 공적인 관심사와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지만, 피고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으며, 표현 방식 또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방식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최종적으로, 기사 제목이나 본문, 구성 등 전체적인 맥락에서 원고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인상을 독자에게 강하게 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판결은 문화행사 입찰 부정 등 사회적·공공의 관심이 높은 사안과 관련한 언론보도는 넓은 범위의 공익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공공의 이익 실현과 충분한 근거, 사실관계 확인에 기반한 보도의 경우, 일부 부정확한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해당 판결은 공적 인물 및 공공의 관심사가 결부된 보도에서 언론의 자유와 감시 기능이 폭넓게 보호받는다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 (3) 조합의 부적절한 인사와 성범죄 피해자 2차 피해 우려 보도에 대해 공익성을 인정한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2가합3376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8. 18. 선고 2023나2006725 판결)

원고는 연예인협동조합의 회장이고, 피고들은 종합뉴스 프로그램 제작사와 소속 기자들이다. 피고들은 2022년 1월 뉴스 프로그램에서 원고에게 성범죄 전력이 있으며, 해당 조합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논란 이후 '회장직 박탈을 논의 중'이라는 내용과, 원고가 성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협회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해당 보도가

사실과 다른 허위내용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정정보정 및 반론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률쟁점은 정정보정 및 반론보도청구의 정당성과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불법행위책임의 인정 여부이다.

법원은 첫째, 정정보정 및 반론보도청구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피고들의 보도는 원고의 성범죄 전력과 관련된 사실 및 원고 스스로의 발언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일부 표현이 원고 진술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으며, 보도의 핵심은 성범죄 전력이 있는 원고가 공익적 단체에서 주요 직책을 맡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이며, 원고가 문제 삼는 부분은 핵심적 내용이 아닌 지엽말단적인 것에 관련되어 원고의 명예와 직접적 관련이 없어 피고 보도가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다.

둘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법원은 피고들의 보도가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조합의 인사 문제와 원고의 영향,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우려를 다룬 공익적 보도로서 언론의 사회적 감시 기능을 수행한 것이라 판단하였다. 원고의 신상과 전력은 이미 공개된 정보에 기초한 것이고, 취재 과정에도 위법성은 없었다고 보았다. 또 기자는 원고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쳤으며, 보도에서는 음성이 변조되어 있어 음성권 침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언급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특정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보도의 취지를 전달하기 위한 불가피한 범위였다고도 판시하였다. 결국, 이 사건 보도와 취재활동은 공익성과 정당성을 갖춘 사회통념상 수인 가능한 범위에 속하며, 원고의 인격권이나 프라이버시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되었다.

이 판결은 언론이 공적 사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사회적 감시·비판 기능은 폭넓게 보호되지만, 허위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하시킨 경우에만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성범죄 전력자의 공익단체 활동은 사회적 논의 가치가 크므로 이를 문제 삼는 보도는 공익성이 인정되며, 이미 공개된 사실을 근거로 한 보도는 불법적 정보 취득으로 볼 수도 없다. 또한 법원은 보도의 내용, 공익성, 취재 경위, 당사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상 수인 가능한 범위인지 판단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 (4) 최고위 공직자의 청렴성과 도덕성 문제는 현저한 공익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18가합58756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4. 8. 선고 2021나2035620 판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31168 판결)

원고는 전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피고 주식회사 D는 K 언론을 운영하는 방송사이며, 피고 E, F, G는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에 참여한 인물들이다. 피고들은 2018년 11월 방송을 통해 원고가 해외에 차명계좌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내용을 방영하였다. 이에 원고는 해당 보도가 허위임을 주장하며 명예훼손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정정보정, 방송 내용의 삭제, 위자료 3억 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은, 해당 언론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와 보도의 진실성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있다.

법원은 해당 보도가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으로, 최고위 공직자의 청렴성과 도덕성 문제를 다루어 현저한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법원은 공직자 감시와 비판은 언론의 본질적 역할이며, 사회적 지위에 따라 보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며, 방송에는 원고 측 반론이 포함되어 균형을 유지하였고, 피고들이 국세청 자료, 현지 취재, 문건 분석 등 객관적 근거와 진실성 확보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도 인정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보도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내용과 수단의 상당성을 갖추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공적 인물, 특히 최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언론의 본질적 역할임을 확인하며, 공익적 목적과 충분한 사실 확인, 균형 잡힌 보도 방식이 갖추어진 경우 모든 내용이 진실로 입증되지 않더라도 명예훼손책임이나 위법성 인정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다. 즉, 공익성과 사실 확인 노력이 있을 때 언론의 자유와 사회적 감시 기능은 보다 폭넓게 보호받을 수 있다.

### [공익성 부정 사례]

#### (1) 보도 내용이 명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도 검증하지 않아 공익성을 부정한 사례

(전주지방법원 2022. 8. 10. 선고 2021가소44042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나9487 판결)

원고는 2015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전주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원고는 수감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어 징벌을 받은 바 있으며, 이후 언론 기사를 통해 '원고가 교도관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이에 원고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은 해당 기사로 인해 원고가 특정될 수 있는지, 기사의 내용이 진실인지 혹은 허위인지, 보도의 위법성이 인정되는지 (공익성, 진실성, 상당성 여부)였다.

법원은 기사에 실명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과 기사 내용, 주변 정황을 종합하면 원고가 누구인지 충분히 특정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기사 내용 중 '금품 갈취 및 협박'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원고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였다고 보았으며, 피고들이 관련 기관에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보도 내용이 단순한 비위 사건의 일부가 아니라 원고 개인의 신상과 명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이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또 기자가 이를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었다고 보아 위법성을 인정하였다. 이 판결은 언론이 사실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하거나, 공익성을 입증하지 못한 채 허위 보도를 할 경우 명예훼손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언론은 보도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공익성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거쳐야 하며, 무분별한 허위 보도로 개인의 명예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 마. 진실성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보도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 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등 참조).

### [진실성 인정 사례]

(1) 보도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면 일부 과장이나 추측이 있더라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대전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3가합203263 판결)

원고는 특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인터넷 신문을 발행하는 사업자이다. 2022년 2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축산식품과는 특정 용역에 대해 전자입찰을 공고하였으며, 최초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가 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2순위 업체와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 2023년 1월에도 동일 용역의 전자입찰이 이루어졌으며, 이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가 계약을 포기하여 2순위 업체가 다시 계약 당사자가 되었다. 이후 피고는 인터넷신문을 통해, 2순위 업체가 입찰 과정에서 유리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다른 업체들이 고의적으로 계약을 포기하였으며, 친족관계를 활용한 부정입찰이 있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보도 게재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은 보도가 사실적 주장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인지, 기사의 진실성 및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문제가 된 기사 내용이 전체적으로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며,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개별 표현이 아니라 전체 맥락과 취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면 일부 과장이나 단순화가 있더라도 위법성은 조각된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 기사에 담긴 의혹은 반복된 계약 포기, 입찰 순위의 변경, 업체 간 가족관계 등 객관적 자료와 정황에 기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법원은 보도의 중요한 부분이 사실에 합치되어 진실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고, 피고의 의혹 제기가 합리적 추론의 범위 내에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기사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의 안일한 행정을 비판하는 데 있었으며, 원고가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았다. 결국 법원은 해당 보도를 허위로 단정할 수 없고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아 원고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보도의 진실성은 개별 문구가 아니라 기사 전체의 맥락과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보도의 핵심적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면, 일부 과장이나 단순화, 추측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곧바로 허위보도로 볼 수 없다.

(2)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충분한 취재와 사실에 기반한 보도라면 일부 과장이나 왜곡이 있어도 진실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1가합58351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1. 22. 선고 2024나2010905 판결)

원고는 마스크 유통업체와 그 대표이사이다. 피고 방송사는 2021년 3월 25일과 26일, 각기 다른 프로그램에서 원고들이 외국과 마스크 거래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실제로 공급하지 못했다는 내용과 대표이사의 개인 SNS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대표이사는 마스크 공급 의사나 능력 없이 중국 법인들로부터 계약금을 수취했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23년 8월 10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허위 보도로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며 손해배상과 영상 삭제를 청구하였다.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은 보도 내용의 허위 여부, 공익 목적과 충분한 취재 노력, 그리고 일부 과장이나 왜곡에도 불구하고 핵심 사실이 진실에 부합할 경우 명예훼손책임의 인정 여부이다.

법원은 주요 보도 내용이 중개무역 목적 등 핵심적 사실과 합치하며, 회사 실체 의심과 대표 관련 내용 또한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은 명예훼손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전체 중요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로 판단하며, 일부 과장이나 왜곡이 있어도 전체 취지가 사실과 일치하면 진실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방송사가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 공익 목적의 보도를 한 점을 들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에서도 언론이 공익을 위해 충분한 취재와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에 근거한 보도를 했다면, 일부 과장이나 표현의 왜곡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진실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책임이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진실성 부정 사례]

(1) 보도의 핵심적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허위의 사실이 적시된 것으로 보아 진실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0가합1158/2021가합34773(병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9. 23. 선고 2022나2009765/2022나2009772(병합) 판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87246/2022다287253(병합) 판결)

원고들은 국회의원과 그 가족이 최대 주주이거나 가족이 대표이사로 재직된 5개 건설회사이고, 피고는 해당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이다. 피고는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원고들이 국회의원 가족이 지배하는 회사이며, 국회의원이 국회 활동 중 특정 정책을 주문한 사실과 연계되어 공사 수주가 이루어졌다는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하였다. 특히 피고는 원고 중 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국회의원의 아들이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했으나, 실제로는 다른 인물이 대표이사였다. 이에 원고들은 보도가 허위사실에 근거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보도(주위적 청구), 반론보도(예비적 청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은 피고가 허위사실을 적시했는지, 기사 전체에서 핵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사실의 오기가 본질적 허위에 해당하는지, 공익성 및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대표이사 특정 오류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의무 발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이다.

1심 법원은 해당 건설회사의 대표이사가 실제로 국회의원의 아들은 아니지만, 회사가 국회의원 및 그 가족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국회의원과 배우자가 2014년까지 최대주주였으며 배우자는 2016년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점, 국회의원 아들이 공법 특허권의 최초 등록권리자이자 공동 보유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언론보도에 일부 과장이나 세부적 오류가 있더라도 중요한 부분에서는 사실과 부합하여 진실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를 기각하였고, 국회의원이 공적 인물이고 보도의 공익성이 인정되는 점에서 언론이 상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청구도 기각하였다.

반면 2심 법원은 기술사용료 관련 보도는 일부 과장이나 세부적 차이는 있었으나, 회사가 실제로 특허기술 보유업체로서 공사에 참여하고 해당 금액을 받았다는 점에서 핵심적인 사실과 합치되어 진실성이 인정되나 대표이사가 실제로 국회의원 가족이 아님에도 언론이 이를 반복적으로 언급한 것은 중요한 사실과 불일치하며, 이해충돌의 근거로 삼은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서 진실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아들을 회사 대표이사로 특정한 보도는 과장이나 세부적 오류의 범위를 넘어 회사와 국회의원 가족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허위사실로 판단되어, 정정보도청구가 인용되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 등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였다. 대법원도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여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공직자와 그 가족의 이해충돌 의혹을 보도하는 언론의 공익적 역할을 널리 인정하였다. 다만, 원고 국회의원과 대표이사 간의 관계 등 핵심 사실관계를 오인한 경우에는 단순한 과장이나 세부적 오류를 넘어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허위보도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기사 전체의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가 진실성 판단의 기준이며, 핵심 정보에 오류가 있을 때는 언론이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 의무를 부담한다.

## 바. 상당성

위법성 조각사유로 상당성 법리를 판단할 때에는 보도의 주요 사실이나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 그리고 보도 당시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진실성이

증명되지 아니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 [상당성 인정 사례]

(1) 공익성이 있고 충분한 취재가 있었다면,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된 언론보도라도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8. 12 선고 2021가합70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4. 7. 선고 2022나2034945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30285 판결)

원고는 인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피고 방송사는 2016년 4월, 원고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운영비의 부적절 사용과 교사·아동 명단 허위 등 불법 의혹을 보도했다. 이후 원고는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권리금 과다 수령 혐의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법원에 피고 언론사를 상대로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주요 법적 쟁점은 추후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 경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 그리고 보도의 공익성 및 위법성 조각 여부다.

1심 법원은 원고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점을 들어, 피고에게 민법 제744조에 따라 명예회복을 위한 추후보도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 또한, 피고의 허위 보도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와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도 부과했다. 법원은 피고가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허위 주장을 보도한 점을 들어, 허위 사실을 진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해 위법성을 인정했으며, 소멸시효는 무죄 판결 확정 시점부터 시작된다고 보아 피고의 시효 항변을 배척했다.

2심 법원은 어린이집 원생 허위 등록 관련 보도에 대한 추후보도청구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각하하고, 횡령 혐의 보도에 대해서는 추후보도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일부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 방송사가 여러 관계자와 전문가를 인터뷰하고 객관적 자료를 검토하는 등 충분한 취재를 했으며, 보도 역시 범죄 혐의를 단정하지 않고 유보적 표현을 사용하였고,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제도 개선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중점을 두었음을 고려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은 해당 보도에 일부 허위 사실이 존재하더라도 공익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손해배상청구는 시효 완성 또는 위법성 조각을 이유로 기각하였다. 대법원도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여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판결은 언론이 개인의 범죄 의혹을 보도할 때, 공익성과 상당한 취재 노력을 갖추면 일부 허위

사실이 포함되더라도 명예훼손책임이 제한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추후보도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관련 법적 요건과 제소기간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시사한다.

(2) 조사 결과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판단한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2. 11. 선고 2018가합11134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8. 19. 선고 2020나2010686 판결,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70654 판결)

원고는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재직한 인물이다. 피고 언론사와 소속 기자, 논설실장은 2018년 6월 21일과 23일 홈페이지에 각각 “국정원이 K 의혹을 받는 H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언론에 정보를 흘렸으며, 원고가 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제1기사와 “이 정보를 언론에 유포한 것은 검찰이며, 국정원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원고가 당시 국정원의 기획이었다고 시인했다”는 제2 기사를 게재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실제로 해당 행위를 하거나 시인한 적이 없음에도 이들 기사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법원은 제1기사에서 원고를 단순히 관련자로 언급했을 뿐 K 의혹 보도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들어, 허위 보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제2 기사 역시 원고가 관련 사실을 시인했다고 인정하지 않았으며, 검찰을 주체로 명확히 기재하고 피고 측 취재에 기초한 내용이었으므로 허위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언론의 감시·비판 역할과 원고의 공직자 지위를 함께 고려할 때 기사에 허위나 악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손해배상청구도 기각했다.

2심 법원은 제1기사의 내용과 표현이 원고가 국가정보원 정보 유출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암시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점을 중시했다. 이 부분은 허위사실로 인정되었고, 제2 기사 역시 원고가 국정원 기획을 시인한 것처럼 보도한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피고들은 객관적 근거나 사실 확인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으며, 오해의 여지가 없는 표현을 쓸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따라서 두 기사 모두 허위성을 인정받아 정정보도청구가 받아들여졌고, 언론 활동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어 원고가 승소했다.

대법원은 제2 기사에 대해, 원고가 국가정보원 기획에 따라 정보 유출을 시인했다는 내용을 피고들이 입증하지 못한 점을 들어 허위 사실로 판단하고, 위법성 조각사유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원심의 손해배상 인정 판결을 유지했다. 반면, 제1 기사에 대해서는 원고가 공직자로서 H 사건을 담당했고, 정보 유출 문제가 공적 관심사였으며, 관련 의혹과 논란이 계속되고 조사에서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 기사 전체가 원고·검찰 개입 의혹과 원고의 반론까지 함께 전한 점을 고려해, 원심이 해당 보도와 관련, 위법성 조각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제1 기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원고는 소를 취하하였고, 소송 절차가 종료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판결은 공직자 관련 의혹 보도에 있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을 제시 하였으며, 기사 전체의 맥락, 반론 반영 여부에 따라 위법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공익적 사안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은 넓게 인정되지만,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을 확인하였다.

#### [상당성 부정 사례]

(1) 신속성이 요구되지 않는 탐사보도를 하면서 교차확인이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검토 없이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여 상당성이 부정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0가합51778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7. 7. 선고 2022나2036163 판결, 대법원 2023. 12. 1. 선고 2023다266482 판결)

원고는 국내 담배회사이고, 피고들은 일간지의 편집 책임자 및 소속 기자들이다. 피고들은 2020년 2월경 원고와 그 자회사에 관하여 ① 자회사가 개발 중인 물질은 가치가 없다는 점, ② 합병 대상 회사와 불법적 이면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점, ③ 이에 반대한 일부 이사회 임원이 해임되었다는 점, ④ 원고가 자회사의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은폐한 채 우회상장을 추진하였다는 점, ⑤ 합병비율 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기사로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보도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은 기사에 포함된 사실적 주장 중 허위사실이 존재하며 그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침해되었는지 여부, 일부 기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더라도 피고들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즉 위법성 조각사유가 성립하는지 여부이다.

법원은 기사 중 일부(자회사의 가치 및 합병비율 관련 내용)는 의견 내지 평가의 영역에 속하므로 객관적 진실성을 다룰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다른 부분(이면약정 체결, 이사회 임원 해임, 독성 은폐, 합병비율 재산정 관련)에서는 허위사실 적시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해당 보도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피고들이 정정보도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법원은 위법성 조각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도가 공익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점은 인정되지만, 탐사보도는 일반 속보 보도와 달리 신속성이 중시되지 않는 만큼 더욱 엄밀하고 신중한 사실 검증이 요구된다고 전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전문가 의견을 교차 확인하거나 인터뷰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취재도 없이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였으므로 법원은 피고들이 해당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였다.

이 판결은 언론보도의 공익성이 인정되더라도 언론사가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상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상당성은 기자의 주관적 확신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검증 노력에 의해 담보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